

최종보고서

해외긴급구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2021. 9.



제 출 문

외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
「해외긴급구호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9.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원 장 백 명 기

연구책임자 : 최 서 희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 미 정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 영 웅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원 : 원 태 주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김 덕 은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조 희 경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이 태 군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이 해 미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제 목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체계의 이해 및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한계	9
제2장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및 비축물자관리체계의 현황 15	
제1절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체계의 현황 및 개선사항	15
1. 긴급현물지원의 법적 근거	15
2. 긴급현물지원의 제도적 근거	27
3. 긴급현물지원의 실무적 체계	30
4. 개선이 필요한 부분	33
제2절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체계의 현황 및 개선사항	35
1. 비축물자관리의 법적 근거	35
2. 비축물자관리의 제도적 근거	36
3. 비축물자관리의 실무적 체계	38
4. 개선이 필요한 부분	43
제3장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체계 사례조사	49
제1절 주요국 사례조사	49
1. 호주	49
2. 프랑스	55
제2절 국내 유관기관 사례조사	61
1. 파주시	61
제4장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체계 사례조사	67

제1절 주요국 사례조사	67
1. 호주	67
2. 일본	72
제2절 국제기구 사례조사	77
1. UNHCR	77
 제5장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체계·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긴급현물지원 매뉴얼	91
제1절 우리나라의 긴급현물지원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91
제2절 우리나라의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96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매뉴얼	100
1. 매뉴얼의 개요	100
2.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매뉴얼(조달 체계)	101
 참고문헌	113
 부록	117
부록 1. 양자 현물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117
부록 2. UNHCR 핵심구호물품(core relief item) 목록	119
부록 3. 국내 긴급구호물자 관리 체계	123
부록 4. 일본 긴급원조물자 공여 실적	129
부록 5. JICA 코로나19 관련 물자 공여 실적	133
부록 6. KOICA의 긴급현물지원 물품 수의계약 현황	136

표 차 례

〈표 2-1〉 「해외긴급구호법」의 구성	17
〈표 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1호) ·	20
〈표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2호) ·	21
〈표 2-4〉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3호) ·	22
〈표 2-5〉 2021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현황	23
〈표 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4호) ·	24
〈표 2-7〉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5호) ·	24
〈표 2-8〉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연혁	27
〈표 2-9〉 KOICA의 인도적지원 보조금 예산구조(21.06.02. 기준)	30
〈표 2-10〉 KOICA의 비축물자관리 예산구조(21.06.02. 기준)	38
〈표 2-11〉 판토스 비축창고 재고 현황(21.06.21. 기준)	39
〈표 2-12〉 해외긴급구호 비축물품 표준안	39
〈표 2-13〉 2015-2018년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 지원실적	40
〈표 2-14〉 긴급구호물품 2020년 비축규모(안)	42
〈표 3-1〉 프랑스 2014년 국제연대 및 개발법의 주요 내용	55
〈표 3-2〉 프랑스의 ODA 운영체계	57
〈표 3-3〉 프랑스 위기지원센터의 조직도	58
〈표 4-1〉 호주 DFAT의 인도적 지원 비축물자	69
〈표 4-2〉 일본 JICA의 국제 긴급 원조를 위한 비축물자	73
〈표 4-3〉 JICA의 2020-2021 비축물자 활용 해외 인도적 지원 내역	74
〈표 4-4〉 적재 주요 원칙 및 가이드라인	86
〈표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1호) ·	92

〈표 5-2〉 1단계: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국내조달 요청하기까지의 단계	102
〈표 5-3〉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1호)	107
〈표 5-4〉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2호)	108
〈표 5-5〉 2단계: 물품의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단계	110
〈표 5-6〉 3단계: 조달 이후 수원국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112

그림 차례

〈그림 1-1〉 우리 외교부가 인도에 지원한 현물	2
〈그림 1-2〉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건수 및 사망건수(2021.08.25.기준)	3
〈그림 1-3〉 연구의 제안 배경 및 목적	4
〈그림 1-4〉 연구수행모듈(추진체계)	7
〈그림 3-1〉 호주 조달 사이트(AusTender) 상 인도주의적 물류 용역 관련 공고문	53
〈그림 3-2〉 현물지원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 행안부 공문	63
〈그림 4-1〉 UNHCR 비상, 보안 및 공급 부서 조직도	79
〈그림 4-2〉 핵심구호물품 카탈로그 품목 예시	80
〈그림 4-3〉 핵심구호물품(CRIs) 품질관리 시스템	81
〈그림 5-1〉 긴급현물지원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개선방안	91
〈그림 5-2〉 비축물자관리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개선방안	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해외긴급구호란 해외 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해야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해외긴급구호의 필요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분쟁, 이주, 기후 및 환경 변화 등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발생빈도가 빈번해지는 상황 속에서, 해외긴급구호가 필요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및 그로 인한 공장 가동, 물품 생산 및 국제 무역에서의 제약 등의 이유로 국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해외긴급구호의 수요가 한층 증가할 것이나 이에 상응하는 정부 및 기관들의 역량은 악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우리 정부 「양자 현물 지원 가이드라인」(부록 1 참조)의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공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에 현물 구매대금을 송금하거나 필요 시 국내비축물품을 제공 또는 국내에서 조달하여 운송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국에서는 의료물품 및 방역물자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어¹⁾ 현물 구매대금을 송금하여 현지에서 구매하는 방식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내에서 방역물품을 조달 및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선 인도의 경

1) 머니투데이, 2020.03.25. “한국은 나은 편..미주·유럽 ‘마스크 대란’ 더 심한 이유”.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2423440085569>. 접속일자: 2021.05.25.

- 우, 의료용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²⁾ 미국, 영국,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 등 국제사회에서는 백신, 산소발생기와 호흡기, 각종 의약품을 지원³⁾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 외교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에 2021년 5월 9일 항공편으로 산소발생기 230대, 산소통 및 산소조절기 200개, 음압캐리어 100개를 우선 수송함(<그림 1-2> 참조)

<그림 1-1> 우리 외교부가 인도에 지원한 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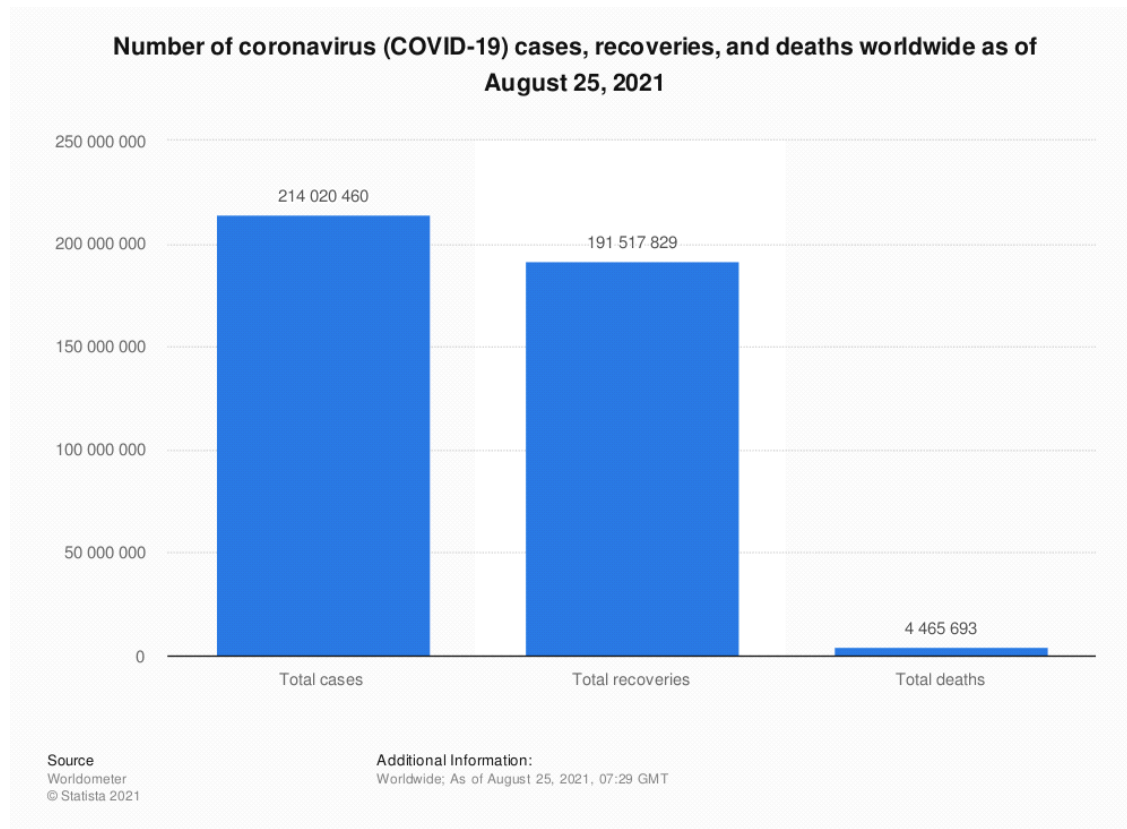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5.09. 외교부.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PhotoView.do?bbsKey=41305> 접속일자: 2021.05.25.)

-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2억 1,402만 건 이상이며, 사망 건수는 446만 건 이상일 정도로 이로 인한 국제 사회의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그림 1-2> 참조)

2) 한겨레. 2021.05.04. “인도 확진자 2천만 명 넘어서...군에 ‘산소 부족’ 해결 도움 손길”. URL: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3862.html. 접속일자: 2021.05.25.

3) MBC 뉴스. 2021.04.28. ““코로나 지옥, 인도를 구하라”...산소·백신 지원 본격화”. URL: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2804_34936.html. 접속일자: 2021.05.25.

<그림 1-2>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건수 및 사망건수(2021.08.25.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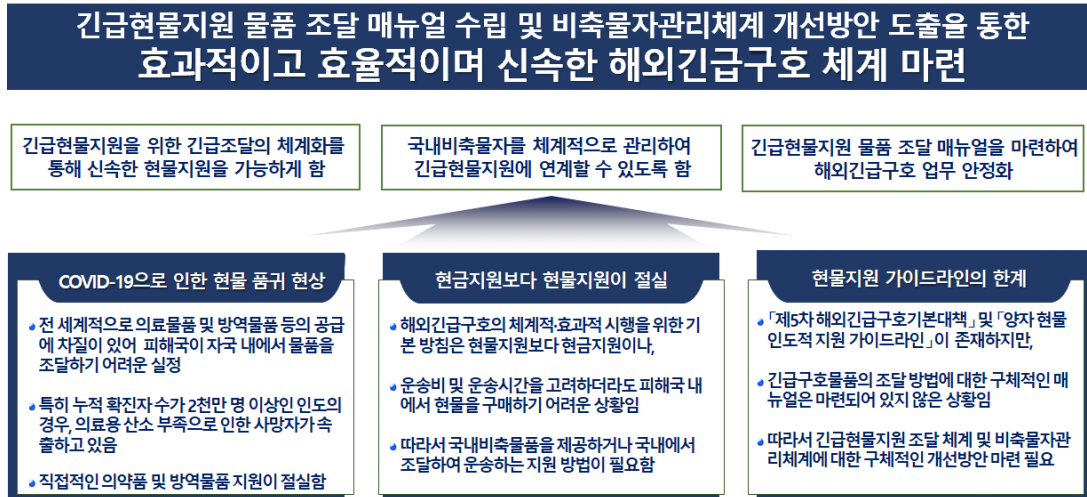


출처: Statista 웹사이트(URL: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87466/covid19-cases-recoveries-deaths-worldwide/>, 접속일자 2021. 08.26.)

-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보건위기 등과 같이 긴급 현물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2020년 1월에 발표된 「제5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및 이에 수록된 「양자 현물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예견한 문건이 아니며,
 - 현 시점과 같은 유례없는 상황에서의 긴급현물지원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해외긴급구호 시 긴급현물지원 조달 체계를 매뉴얼화하고 비축물자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해외 현물지원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긴급현물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국에 지체 없이 최대한 빠르게 현물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긴급현물지원을 뒷받침하는 비축물자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긴급현물 지원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그림 1-3> 연구의 제안 배경 및 목적



□ 연구목적

-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긴급현물지원 물품 조달 매뉴얼 수립 및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마련”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①긴급현물지원 방식 및 ②비축물자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긴급현물지원과 비축물자관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두 분야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되 이를 연계(예: 비축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긴급현물지원 시 바로 활용하거나 긴급현물지원 이후 비축하는 잔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하고자 함
-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우리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 및 비축물자관리체계를 법률적, 제도적,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도출
 - 주요국 및 국내유관기관(지자체 등)의 관련 체계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도출된 시사점을 검토하여 우리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 및 비축물자관리체계에 적용 가능한 부분 선정
- 긴급현물지원체계 ·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관련 정책 제언 제시
-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체계(매뉴얼) 제작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체계의 이해 및 연구의 범위

- 우리 정부는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재난의 피해국에 긴급구호물품의 수송,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함
 - 이에 외교부 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구호물품·장비의 보관·정비,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함
- 해외긴급구호의 종류로는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의 파견,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현금지원, △보건의료활동, △수송지원, △임시 재해복구,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등이 있음
- 해외긴급구호의 체계적·효과적 시행을 위해 기본 방침에 따라 운송비 및 운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물보다 현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
 - (현금지원) 양자지원보다는 관련 UN기구 또는 ICRC·IFRC 등 다자채널을 통한 지원을 우선 고려⁴⁾하는 경향이 있었음
 - (현물지원) 현물지원은 피해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현지 공관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국 현지에서 현물을 조달하는 현지조달과 우리나라에서 현물을 조달하여 피해국으로 발송하는 국내조달로 나눌 수 있음
 - (KDRT 파견)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사회의 파견 요청, △피해 규모, △재난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파견 소요시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파견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함
- 위와 같은 현금지원, 현물지원, KDRT 파견 등 해외긴급구호체계의 유형 가운데 본 연구는 국내조달을 통한 긴급현물지원 및 이와 관계된 비축물자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본 연구의 범위는 ① 우리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비축물

4) 출처: 외교부(2020.1.). 제5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5p.

자관리 체계 조사 및 현황 분석, ②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비축물자관리 체계와 관련된 주요 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 우리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비축물자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관련 정책 제언 제공, ④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매뉴얼) 제작 등 크게 네 가지 부분임

- 본 연구과제는 우리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매뉴얼 제작 및 비축물자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비축물자관리 체계를 조사하고 해외 및 국내유관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2022년 제6차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개정에 참고가 될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러한 추진방향을 담아 본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 가지 부분을 다섯 가지 연구수행 모듈로 구분하여 수행함(그림 1-4) 참조
 - 동 모듈은 순차적 진행이 아니라, 일부 병렬적 진행을 특징으로 함

<그림 1-4> 연구수행모듈(추진체계)

	Module 1	Module 2	Module 3	Module 4	Module 5
Task	우리 해외긴급구호체계 현황 조사·분석	주요국 및 국내 유관기관(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긴급현물지원 사례 분석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비축물자관리체계 사례 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부분 선정	긴급현물지원 매뉴얼 제작 및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Method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분석 해외긴급구호 전문가 인터뷰 해외긴급구호 및 계약 관련 법령 분석	해외 사례 자료조사 및 수집 국내 사례 자료조사 및 수집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해외 사례 자료조사 및 수집 국제기구 사례 자료조사 및 수집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긴급현물지원 적용 부분 선정 비축물자관리체계 적용 부분 선정 그 외 적용가능한 부분 선정	긴급현물지원 매뉴얼 제작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해외긴급구호체계 개선방안 관련 정책 제언 도출
Output	• 문헌조사 및 온라인 서칭 • 전문가 인터뷰 • 발주처 의견 수렴 •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비축물자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문헌조사 및 온라인 서칭 • 전문가 인터뷰 • 발주처 의견 수렴 • 주요국 1~2개 사례 도출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사례 도출	• 문헌조사 및 온라인 서칭 • 전문가 인터뷰 • 발주처 의견 수렴 • 주요국 사례 1~2개 도출 • 국제기구 사례 도출	•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 전문가 자문 • 발주처 의견 수렴 • 우리나라의 긴급현물지원 및 비축물자관리에 적용 가능한 부분 최종 선정	•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 전문가 자문 • 발주처 의견 수렴 •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에 관한 실무 매뉴얼 •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2. 연구의 방법

□ 우리 해외긴급구호체계 현황 조사·분석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분석 실시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및 관련 법령 등을 통해 해외긴급구호 정책의 변화 및 최신 현황 분석
- 외교부, KOICA 등 인도적 지원 및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관련 정책담당자 및 이행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체계 및 현황 조사

□ 주요국 및 국내 유관기관의 긴급현물지원체계 사례 분석⁵⁾

- (주요국의 긴급현물지원체계 조사)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로 호주와 프랑스를 선정하여 해당국의 긴급현물지원체계를 조사함
 -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긴급현물지원체계 재구성
 -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입수하기 어려운 내용은 조사대상국의 긴급현물지원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 수행
- (국내 유관기관의 긴급현물지원체계 조사) 긴급현물지원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로는 파주시를 선정하여 긴급현물지원체계 사례조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문의하여 인터뷰 조사 실시

□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비축물자관리체계 사례 분석⁶⁾

- (주요국의 비축물자관리체계 조사)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로 호주와 일본을 선정하여 해당국의 비축물자관리체계를 조사함
 -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비축물자관리체계 재구성
 -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입수하기 어려운 내용은 분석대상국의 업무유관자를 확

5) 호주와 프랑스를 선정한 이유는 사전조사 결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긴급구호 시 방역물품 등 의료물품을 해외에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며, 파주시를 선정한 이유는 사전조사 결과 2020년 방역물품을 조달을 통해 구매하여 해외에 현물지원하였다는 보도자료가 근거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6) 호주를 선정한 이유는 사전조사 결과 비축물자의 보존기한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조사되어서 그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선정하였으며,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사전조사 결과 일본 국제긴급원조다(JDR)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해외긴급구호 시 비축물자관리 체계도 이와 유사한지를 알아보고자 선정하였음. UNHCR은 사전조사 결과 핵심구호물품(Core Relief Ite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선정하였음.

인하여 동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

- (국제기구의 비축물자관리체계 조사) 긴급구호를 위한 비축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UNHCR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

□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 선정

- 상기 조사한 해외사례로부터 벤치마킹 가능한 부분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강화 혹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도출
-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현물지원체계 및 비축물자관리체계 제고를 위해 상기의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함
 -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 연구진 회의 등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 1차 선정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차 선정된 적용 가능한 부분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적용 가능한 부분 2차 선정 및 수렴
 - (발주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된 부분들을 대상으로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

□ 긴급현물지원 ·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및 정책 제언 제공

- 긴급현물지원체계 및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및 정책 제언 제공
 - 우리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체계 및 비축물자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및 국내 유관기관의 관련 체계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긴급현물지원체계 및 비축물자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수립 및 정책 제언 제공
-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체계(매뉴얼) 제작
 -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 매뉴얼 작성

3. 연구의 한계

- (연구방법론의 한계) 해외 긴급현물지원체계 및 비축물자관리체계에 대한 국

내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한 1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음

- **(자료 수집의 한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긴급현물지원체계 및 비축물자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문서화된 대외공개용 정책자료가 미비하였으며, 해외 자료 또한 인터넷 상 공개된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 짧은 연구기간 및 제한된 연구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해외 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관계기관 대상 이메일을 활용한 서면 인터뷰로 대체하였음
 - 그러나 조사대상국에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각국 정부기관의 내부방침에 의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음

제2장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 지원 및 비축물자관리체계 현황

제1절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체계의 현황
및 개선사항

제2절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체계의 현황
및 개선사항

제2장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및 비축물자관리체계의 현황

제1절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체계의 현황 및 개선사항

1. 긴급현물지원의 법적 근거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검토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일반사항

- **(검토배경)**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현물지원은 국제개발협력 중 무상협력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개발협력에서 긴급현물지원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10년 7월 26일 첫 시행되었으며, 현행 법률은 2020년 5월 26일에 내용을 대폭 개정하여⁷⁾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된 것임
- **(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을 기여함” 임(제1조 목적)
- **(법의 위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기본 원칙, 국가 등의 책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립 및 업무범위,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국제개발협력에 대

7) 개정 이유는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상·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바,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 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출처: 법제처)

한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현물지원의 근거 조항

- (정의) 동 법에서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정의)
 - 따라서 해외에서 긴급한 재난의 구호를 위해 현물지원을 하는 것을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본정신) 동 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 동 법의 기본정신이 인도주의의 실현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현물지원을 지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동 법에서는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2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 따라서 해외긴급구호 시 긴급현물지원 및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비축물자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음

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검토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반사항

- (검토배경)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긴급구호법)」은 해외긴급구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해외긴급구호체계 중 하나인 현금지원, 현물지원, KDRT 파견 중 현물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함
- (연혁) 「해외긴급구호법」은 2007년 9월 30일 첫 시행되었으며, 현행 법률은 2018년 10월 16일에 일부 개정되어 2019년 4월 17일에 시행된 것임

- **(법의 위상)** 「해외긴급구호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해외긴급구호법」에 규정된 내용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주요 내용)** 「해외긴급구호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회의 설치·운영, 해외긴급구호대(이하 KDRT)의 편성 및 파견 등을 다루고 있음
 - KDRT는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감소, 복구 또는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파견하는 긴급구호대로 전문가 지원(인적 지원)을 의미함
 - 「해외긴급구호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외긴급구호 시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에 대한 조항은 제5조 제1항 ‘해외긴급구호의 종류’에서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및 ‘3. 현금지원’에서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1> 「해외긴급구호법」의 구성

조항	제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구호물품·장비의 지원(현물지원), 현금지원에 대해 언급됨
제6조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제6조의2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6조의3	실태조사	
제7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제8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회의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	
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KDRT에 관한 내용
제12조	해외긴급구호대장	KDRT에 관한 내용
제13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제14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KDRT에 관한 내용
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KDRT에 관한 내용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출처: 법제처

(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물지원의 근거 조항

- **(목적)** 동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 파견, 긴급 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 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 「해외긴급구호법」 상 동법의 목적 중 하나로 구호물품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긴급현물지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의)** 동 법에서 “해외긴급구호”의 정의는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제2조 정의)
 - 피해국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 해외긴급구호이므로, 긴급현물지원도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는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현금지원, △보건의료활동, △수송지원, △임시 재해복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중 명시적으로 “현물지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이라는 부분을 현물지원의 근거로 볼 수 있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검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⁸⁾에 대한 검토

- **(검토배경)** 해외긴급구호 시 긴급현물지원을 위해 국내조달을 하는 경우, 외교부가 직접 조달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외교부의 지시를 받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이 조달행위를 수행함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법률은 법률 제 17816호로, 2021.07.06. 시행, 2021.01.05. 일부개정된 것임을 밝힘.

- 이에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 관련 근거조항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목적)**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목적)
- **(법의 위상)**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수의계약 체결 관련)** 「국가계약법」 제7조는 계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긴급현물지원과 관련된 조달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령」⁹⁾에 대한 검토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26조 제1항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들을 각호와 같이 나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4개 목을 제시하고 있음
 -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내용으로 가목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법률은 대통령령 제31864호로, 2021.07.06. 시행, 2021.07.06. 일부개정된 것임을 밝힘.

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임

- 다만, 가목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의미가 “국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외”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본 항목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문상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표 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1호)

구분	내용
제1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출처: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11개 목을 제시하고 있음
 - 만약 수원국에서 특정한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기 중 수원국의 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나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1인 뿐인 경우라면,
 - 이 중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것은 자목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2호)

구분	내용
제2호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9개 목을 제시하고 있음
 - 제3호의 경우, 직접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자 가운데 성능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해당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함
 - 재난 및 긴급구호와 관련된 제품 중 차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¹⁰⁾”을 직접생산하

10) 재난안전제품은 재난관리 체계 별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제품군에 포함되면 재난

- 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난 안전제품은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련된 제품군으로서, 2021년 재난 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군을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검토 결과, 2021년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총 10개 제품 중 1개 제품(화재 초기 유해가스 방지용 일회용 마스크, (주)엘림)만이 해외긴급구호를 위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난안전제품 조달을 통한 긴급한 현물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4>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3호)

구분	내용
제3호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20. 9. 29.>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 안전제품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안전제품으로 보고 있으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고 있음. (출처: 행정안전부. URL: <https://www.mois.go.kr/ft/sub/a06/b10/disasterSafetyProduct/screen.do>, 접속일자: 2021.08.17.)

<표 2-5> 2021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현황

구분	회사명	제품명	핵심내용
1	대진기술정보(주)	NFC를 적용한 지중 매설 관로 표시장치	도로법에 의한 인식표지내에 NFC 태그를 내장하여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태깅 시 지하에 매설된 관로들에 대한 정보공유로 굴착 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관로 표시장치
2	(주)시내엔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폴리에스터 그물망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채하여 그물망에 적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 매개체인 술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를 우화시기에 외부 탈출을 차단하고 폐사시켜 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물망
3	(주)이지템	비접촉 거울형 적외선 체온계	체온 측정자, 피측정자 및 측정 기기로부터의 제2차 감염이나 전염의 위험 없이 비접촉식 체온측정으로 전염병 확산을 초기에 방지하며, 거울형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적외선 체온계
4	(주)아세아방재	무게추 방식의 슬라이딩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고층건물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까지 모든 계층이 한 층씩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하고 단순한 무동력 피난기구
5	(주)파이어캡	분배전반 메쉬커버 부착형 소화용구	수배전반 등 밀폐된 소공간에서 화재발생 시 발화열 감지 및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여 화재 초기진압 및 유리비산 방지기능 및 특수 소화약제 사용으로 화재 진화 이후 전자기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화용구
6	(주)멕아이씨에스	산소농도 자동제어 기술을 적용한 양압지속유지기	전기적 산소 혼합기술을 적용하여 설정 수치만큼 안정적이고 일정한 공기와 산소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환자의 호흡을 지원하는 양압지속 유지장치
7	광희엔지니어링(주)	원터치형 긴급차단 장치가 적용된 롤러체인식 수문권양기	하천제방이나 방조제, 빗물펌프장, 육갑문, 양·배수펌프장, 농수로에 설치하여 홍수와 같은 비상시에 원터치 운전으로 유량의 신속조절이 가능한 롤러체인 구동식 수문개폐 권양장치
8	메트로티엔씨(주)	강재감쇠기와 회전마찰감쇠기가 결합된 감쇠장치	기존 구조물(건축물)에 가새형, 벽식형, 인방보 형태 등으로 설치하여 중·약·강진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붕괴 등의 재난시 건축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쇠장치
9	제룡전기(주)	유독 물질 배출 저감형 에폭시 수지를 적용한 몰드변압기	유독 물질 저감형 에폭시 합성 수지 배합 기술을 적용하여 화재발생시 연기 확산 저감 및 유독 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몰드변압기
10	(주)엘립	화재 초기 유해가스 방지용 일회용	화재 초기시 호흡부(코와 입)에 간단하게 착용하여 유해가스에 대한 질식과 중독을 피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안전한 장소로

구분	회사명	제품명	핵심내용
		마스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회용 마스크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중 재난안전제품 인증 현황(URL: <https://www.koita.or.kr/certificate/disaster2.aspx>, 접속일자: 2021.08.17.)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가, 나, 라, 다 각 4개 목을 살펴보면 긴급현물지원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할만한 항목을 찾기 어려우므로,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조달 시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4호)

구분	내용
제4호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수의계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외의 수원국에 기여한 실적을 살펴보면 2,000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므로(부록 6. 참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2-7>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5호)

구분	내용
제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

구분	내용
	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4) 시사점

- 이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법」, 그리고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국내조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찾아보고자 하였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인도주의 실현 및 개발도

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법률임(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 동법 제12조¹¹⁾에 의하여 무상협력을 포함한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의 주체가 외교부임을 알 수 있음
- 「해외긴급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KDRT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화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임
 - 현금지원 또는 현물지원에 관한 조항이 해외긴급구호법에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실무자들이 긴급현물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근거가 될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으로써 작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조달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조달을 실시해야 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긴급현물지원 조달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조달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음
 - 긴급현물지원 조달 시 수의계약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제시된, 가목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중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사료됨
 - 이 밖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들이 존재하나,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신기술·신제품 등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으로부터 구매, 2천만 원 미만 구매 등) 위 항목이 가장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범위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외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11)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2. 긴급현물지원의 제도적 근거

1)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검토

(1)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대한 일반사항

- 2008년 3월 ‘해외긴급구호대책’ 이 처음 수립되고, 2013년 10월 두 번째 ‘해외긴급구호’ 대책 이후로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이 수립되었음

<표 2-8>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연혁 및 주요 내용

구분	날짜	제목	주요 내용
1	2008. 3.	해외긴급구호 대책	• 재난의 종류·규모·특성별 해외긴급구호 •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 해외긴급구호 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 해외긴급구호 민간종사자에 대한 피해지원
2	2013.10.	해외긴급구호 대책	• 재난의 종류·규모·특성별 해외긴급구호 •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 해외긴급구호 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구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3	2015. 9.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 재난의 종류·규모·특성별 해외긴급구호 •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 해외긴급구호 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4	2018. 1.	제4차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 해외긴급구호 업무 개괄 • 해외긴급구호 기본방향 • 해외긴급구호대(KDRT) 운영 • 민간단체와의 공조체계구축

구분	날짜	제목	주요 내용
			• 해외긴급구호 분야 국제협력 • (첨부 1) 양자 현물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 (첨부 2) KDRT 파견시 업무수행절차 • (첨부 3) 주요 대규모 해외재난 긴급구호 실적
5	2020. 1.	제5차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 해외긴급구호 업무 개괄 • 해외긴급구호 기본방향 • 해외긴급구호대(KDRT) 운영 • 민간단체와의 공조체계구축 • 해외긴급구호 분야 국제협력 • (첨부 1) 양자 현물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 (첨부 2) KDRT 파견시 업무수행절차 • (첨부 3) 주요 대규모 해외재난 긴급구호 실적 • (첨부 4) KDRT 장비 구매·수리·폐기 관련 각종 양식

출처: 연도별 해외긴급구호대책 및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 「해외긴급구호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검수 등,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체계의 구축,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구축,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5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은 △해외긴급구호대의 료팀 운영·관리 효율화, △KDRT 장비·물품의 운용 및 관리 체계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KDRT 파견시 인력 편성 계획 조정, △KDRT 파견에 대비하여 상시 관리하는 인력풀 인원수 조정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해외긴급구호법과 마찬가지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역시 주로 KDRT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중 현물지원에 관한 내용

- 2008년 및 2013년 ‘해외긴급구호대책’, 2015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는 현물지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8년 및 2020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첨부 문서로 ‘양자 현물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이 수록되어 있음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가운데 현물지원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매우 축약적이며 2018년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해외 긴급구호대(KDRT)의 설치 및 운영, 민간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긴급현물지원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됨

2) 시사점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은 해외긴급구호 업무의 개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방향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주로 KDRT의 운영과 KDRT 파견시 업무수행절차 등 많은 부분 KDRT 활용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표 2-8> 참조)
 - 「해외긴급구호법」과 마찬가지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역시 KDRT의 운영 및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현물지원에 대한 내용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3. 긴급현물지원의 실무적 체계¹²⁾

1) 긴급현물지원의 주체

(1) 결정기관 : 외교부의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우리나라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에 관하여 지원 국가, 지원 규모, 지원 품목, 운송수단 및 운송일정을 결정하는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이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다자협력인도지원실

- KOICA는 인도적지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음
 - 해외긴급구호 예산 중 재난대응(해외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예산 중 긴급재난 예산을 활용하여 KOICA에서 긴급현물지원을 수행함

<표 2-9> KOICA의 인도적지원 보조금 예산구조(21.06.02. 기준)

항	목	세목	세세목
인도적지원 (ODA)	긴급구호	재난대응(해외재난 대응)	만성적 재난 지원액
			긴급재난 대비 유보액

출처: 2021년 6월 16일 KOICA 인터뷰 시 제공받은 자료.

2) 긴급현물지원의 체계

(1) 수원국 정부의 지원 요청 접수

-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수원국 정부 측¹³⁾이 재외공관을 통해 구호 지원 요청시, 피해국 주재 재외공관이 외교부에 현물지원 건의를 접수하면서 지원 절차가 시작됨

(2) 외교부 내부 검토를 통한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 수원국 정부의 지원요청이 접수된 이후, 외교부 내부 검토를 통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함

12) 긴급현물지원의 실무적 체계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16일 14시~16시에 이루어진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13) 수원국 측은 다수의 경우 수원국 외교부임.

(3) 긴급현물지원 결정 시 수원국에 통보

- 지원 결정시 수원국 측에 우리 측 지원 결정을 통보하고, 재외공관¹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함

(4) 품목 확정

- 수원국 측은 수원국 내에서 현물지원을 받을 수원기관에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여 이를 재외공관에 알리고 공관은 본부에 이를 보고함
 - 예를 들어, 품목이 의료기기(의약품)인 경우에는 수원국 외교부는 수원국 보건부 등에 품목을 문의하고, 수원국 보건부에서 병원 등 물품을 직접 필요로 하는 수원기관에 필요 품목을 문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함

(5) 수하인 정보 확인

- 수원국 측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하인 정보를 함께 확인함
 - 수하인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재확인

(6) 운송조건 및 운송일정 협의

- 물품을 수원국 공항까지만 발송할 것인지(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아니면 목적지인 수원기관까지 인도할 것인지(DAP, Delivered At Place) 등의 운송조건을 사전에 협의해야 함
 - 만약에 수원국에서 특정 요일에는 우리 정부에서 보내는 물품을 수신할 수 없다고 우리 측에 알려오면, 수원국에서 물품을 수신할 수 있는 날로 운송일정을 재조정 및 연기 불가피

(7) 조달

- 품목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KOICA의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 필요한 긴급현물 지원 물품의 조달을 의뢰함
- KOICA의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은 KOICA 조달팀계약팀에 품목의 조달을 의뢰하여 계약방법을 설정한 다음 입찰공고를 내고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함

14)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예외적으로 주한대사관과 직접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협의하기도 함.

(8) 납품

- KOICA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KOICA에 납품을 하면, KOICA는 이를 인수받아 검수를 수행함

(9) 운송

- KOICA에서는 주로 CIP 운송조건으로 제품을 수원국 정부의 공항에까지 납품 하면, 수원국에서 자국 내 운송수단을 동원하여 수원기관에 최종 전달될 수 있도록 함

(10) 지원결과 보고 및 기증식 개최

- 또한 재외공관은 해당국에 지원 물품 도착 후 수령증을 접수하고, 필요시 보도 자료 배포 및 기증식을 개최하며 지원 결과 보고 등을 시행함

4. 개선이 필요한 부분

1)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의 수의계약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 「해외긴급구호법」에서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중 명시적으로 “현물지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이라는 부분을 간접적인 현물지원의 근거로 볼 수는 있음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국내조달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쟁계약보다는 수의계약이 전체 현물지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데 유리한데, 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원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인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범위가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 있는 타국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활용할 수 있는지 법문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함

2) 의사소통 거버넌스 구조 복잡성

- 지원국가 결정, 기본적인 품목확정, 수하인 정보 확인, 운송조건 및 운송일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재외공관, 본부, KOICA 측이 서로 공문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소통 구조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음
 - 외교부는 수하인 정보 및 운송조건, 운송일정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를 재외공관을 통해 수원국 정부 측과 논의하여 재외공관 이를 다시 본부(외교부)에 전달하면 외교부는 해당 내용을 KOICA에 전달하는 구조임
 - 따라서 현물지원의 최종적인 납품 및 운송이 이루어지기까지 재외공관, 본부, KOICA 간의 의사소통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음

3)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조달에 필요한 사전정보가 미비하여 대응이 어려움

- 의료제품을 현물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얻는데 시간적인 지연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임
 -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많이 현물지원이 되었던 의료기

- 기를 볼 때,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
- 서는 수원국 현지의 전압 등의 수원국 내의 사용환경, 제품의 규격, 의료기기 인증 등이 사전에 명시가 되어야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정보가 사전에 미리 준비되지 않기에 조달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게 됨 ¹⁵⁾
- 공개입찰에 필요한 상세 사양을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데 수일 내지는 수주가 소요됨
 - 제품의 규격이 확정되지 않으면 여러 입찰자 가운데 어떤 업체를 선정할지에 대한 확정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음

15) 진단키트의 경우, 수원국 정부에서 특정한 회사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제품을 확정하여 현물지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단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음.

제2절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체계의 현황 및 개선사항

1. 비축물자관리의 법적 근거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검토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비축물자관리의 근거 조항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외교부장관이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3호에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검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비축물자 관리의 책임, 관리 체계 및 운영 체계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시사점

- 비축물자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법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제도적·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 비축물자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이하에서는 정책문건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2020.01)’을 검토하고자 함

2. 비축물자관리의 제도적 근거

1)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2020.01)’의 검토

(1)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2020.01)’의 수립 배경 및 연혁

- 2007.3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규모 해외재난 시 범정부적 차원의 구호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8.3월 「제1차 해외긴급구호대책」 수립
 - 제1차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긴급구호 운영 체제,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편성, △KDRT 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 2011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2013.10월 「제2차 해외긴급구호대책」 수립
 - 제2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1차 대책의 내용과 유사하며, 구조대 중심의 KDRT 표준 편성표 및 의료진 중심의 KDRT 표준편성표를 추가하였으며, 해외긴급구호본부 연락체계 및 KDRT 비상연락망에서 담당자가 변경된 사안을 업데이트함
- 2015.9월 「제3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 제3차 기본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KDRT 표준인력 편성 및 인력풀 구성 구체 방안 마련, △긴급구호활동장비 비축 원칙 및 관리 책임 규정, △신속한 구호대 파견 결정을 위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소집 체계 신설, △평시 KDRT 관리·운영을 위한 KDRT 운영협의회 설치 및 KDRT 사무국(KOICA) 역할 규정 등
- 2018.1월 「제4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 제4차 기본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긴급구호 기본방향 제시(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과 구분), △KDRT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화, △KDRT 파견 시 인력 편성 조정, △KDRT 파견에 대비하여 상시 관리하는 인력풀 인원 수 조정 등
- 2020.1월 「제5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 제5차 기본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KDRT 의료팀 운영·관리 효율화, △KDRT 장비·물품 운용 및 관리 체계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KDRT 파견 시 인력 평성 계획 조정, △KDRT 파견에 대비하여 상시 관리하는 인력풀 인원 수 조정 등

(2)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2020.01)’의 비축물자 관련 사항

-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물 지원을 위해 재난현장에서의 필요성이 높은 주거 및 위생용품(텐트, 방수포, 담요, 식수정화제 등) 중심으로 구호물품을 상시 비축·관리”¹⁶⁾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시사점

-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체계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로 2020년 1월에 발표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살펴본 결과, 현물지원 관련 항목 아래에 비축물자의 품목을 제시하여 구호물품을 상시 비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내용 외에는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체계와 관련된 사항이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2020.01)’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진은 해외긴급구호의 긴급현물지원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KOICA의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의 인도적 지원 전문가와 접촉하여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의 실무적 체계를 KOICA 내부분건 및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고자 함

16) 출처: 외교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2020.01) 6p.

3. 비축물자관리의 실무적 체계¹⁷⁾

1) 비축물자관리의 주체

(1) 상위기관 : 외교부의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는 관리기관인 KOICA로부터 국내외 비축물자 재고현황, 입출고 내역, 유효기관 현황 등을 분기별로 정기 보고 받아 현물지원 방침 결정에 참고함

(2) 관리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다자협력인도지원실

- KOICA는 ODA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음
 - 해외긴급구호 예산 중 재난대응시스템강화와 관련된 예산에서 “해외재난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라는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비축물자를 KOICA에서 관리하고 있음

<표 2-10> KOICA의 비축물자관리 예산구조(21.06.02. 기준)

항	목	세목	세세목
인도적지원(ODA)	긴급구호	재난대응시스템강화	해외재난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출처: 2021년 6월 16일 KOICA 인터뷰 시 제공받은 자료.

(3) 물류업체 계약기관 : 민간물류기업

- 물류 전담 업체인 (주)판토스¹⁸⁾와 2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행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평가에 의해 계약 조기종료 및 연장 가능
 - 국내 제한경쟁 및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고문을 냈으며 낙찰자 선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평가)¹⁹⁾를 통해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17) 긴급현물지원의 실무적 체계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16일 14시~16시에 이루어진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 및 KOICA에서 제공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18) (주)판토스는 지난 2012년부터 KOICA의 물류 전담 파트너로 선정되어 해외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긴급 구호물자에 대한 보관 및 재고관리, 포장, 상하역, 재난지역 긴급운송 등 물류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출처:MK뉴스(2020.05.04.) 판토스, 코로나 의료물품 3개월간 75t 해외로 날랐다. URL: <https://www.mk.co.kr/news/print/2020/455282>. (접속일자: 2021.05.14.)).

19) KOICA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규정에 의거, 기술평가 후 85점 이상 획득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한 후,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출처: 2019-2021 KOICA 전담물류용역 업체선정 국내입찰공고문)

2019.11.1~2021.10.31까지임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의 관련 규정으로는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기술평가기준」 및 기타 관련 규정,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근거를 둠²⁰⁾
- 창고면적은 긴급구호를 위한 비축물자에 할당된 평수는 500평이며 KDRT 장비를 보관하는 별도 750평이 있어 총 1,250평임
- 제공되는 서비스는 물품보관, 운송, 차량제공 등이며 전액 실비 청구됨
- 2021년 6월 21일 기준, 판토스 비축창고는 텐트, 물 블래더(휴대용 물통), 휴대용 연막분무기, 발전기, 식수정화제 등 약 2억 원 규모의 물자를 비축하고 있음(<표 2-11> 참조)

<표 2-11> 판토스 비축창고 재고 현황(2021.06.21. 기준)

품목	수 량	단 가(단위: 원)
텐트(가족용)	190	93,814,400
물 블래더(휴대용 물통, 6,000ℓ)	29	23,200,000
휴대용 연막분무기	99	49,500,000
텐트(구형)	66	14,520,000
발전기(60cm×33cm×48cm)	5	1,000,000
식수정화제(1박스당 14,000정)	21박스	29,400,000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 제공 자료 재구성.

2) 비축물자관리의 체계

(1) 코로나19 이전의 상황

- 지원 실적, 비축 효용성, 타 공여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표준물품(주거, 물, 위생 등 3개 분야) 구성 및 물품별 1회 최소 수혜단위(2,000명), 수혜기간(정수제 50일, 기타 물품 6개월~반영구적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음

<표 2-12> 해외긴급구호 비축물품 표준안

분야	표준물품	기준수량	비고	
주거	텐트	100개	1텐트당 5인 기준	* 부피, 물류비를 감안 단위 수혜자수를 500명으로 조정
	천막	250개	1텐트당 천막 2.5개	
	담요	2,000개	1인당 1개 기준	
물	물블래더	5개	1인당 1일 물 사용량 10리터 기준(1천 갤런=3780리터)	

20) 출처: 2019-2021 KOICA 전담물류용역 업체선정 제안요청서(2019.8.)

	물통	2,000개	1명당 1개 기준
	정수제	2,000box	1회 5리터 정수, 1일 2회 사용, 50일 사용 기준(1box=100개) 표준안1단위=1,000,000리터(10리터x2,000명x50일) ※ 정수제의 수량의 경우 정수량을 수량의 기준으로 함.
위생	수건	2,000개	1인당 1개 기준
	위생키트	400개	5인 가족당 1개 기준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2014.12.)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

-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국내외 비축물품을 지원한 건수가 연도별 3건 이내인 상황이었어서 상시비축 재고량을 증가시키면, 이에 따른 유효기간 관리 문제와 관리비용 증가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음(<표 2-13> 참조)

-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현지수요 충족,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효과 제고 등 측면에서 현물보다 현금지원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확대되어, 우리 정부도 한때는 현금지원 확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²¹⁾하기도 함

<표 2-13> 2015-2018년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 지원실적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비축물품 지원건수	3	0	1	1
국내비축물품 지원건수	0	1	1	2
전체 현물·현금지원 건수 대비 현물지원 비율	4%	1%	2%	2%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2019.04.)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

- (국내) 비축물자의 입출고 기록(분출내역) 및 재고현황은 (주)판토스의 온라인 물류관리 시스템(PVS)을 통해 KOICA가 재고현황 및 입출고 기록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주)판토스로부터 현물지원 후 건별 최종 출고내역 보고문서 공문 접수 및 분기별 재고현황 보고접수 후 내부 보고하도록 프로세스를 정립함
 - 최종 입출고내역은 물류업체의 건별 출고내역 보고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물류업체의 온라인 물류관리 시스템 내역과도 비교·확인하여 점검함
 - 국내 물류창고의 경우 입출고 현황, 비축물품 관리 강화를 위해 물류창고 방문 실사를 연 2회(반기 1회)로 조정하였음
 - 비축창고 내 재고현황판을 설치하여 방문 시 재고 현황 및 보관 상태를 파악함(재고현황판 내 품목명, 현 재고량(EA), 포장단위, 보관방법, 보관위치,

21)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2014.12.)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

청결상태, 비고 등 기재)

- 물류업체는 KOICA 담당자와 유선 및 이메일로 확인된 경우에만 물품의 반입·반출을 실시하며 24시간 내로 관련 정보를 분기별 재고 현황 양식에 따라 작성 후 KOICA에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체계화하였음
- (해외) UNHRD 비축 구호물품은 건별로 재난지원 결과보고 내 출고내역을 포함하여 보고 및 분기별 재고현황(입출고내역 포함)을 내부보고하는 시스템을 정립하였음
 - 그러나 해외비축창고 축소 운영 결정(2014.12월)에 따라 UNHRD 창고(파나마 및 두바이) 비축물자를 대부분 소진하여 잠정 중단에 대해 KOICA가 검토한 바 있음
- KOICA는 국내 물류업체인 (주)판토스와 UNHRD의 제출 보고를 근거로 매분기 비축현황을 점검·보고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물품 조달 및 유효기간 경과 물품 폐기 등 조치를 시행하였음
 - 비축물자의 조달은 연 2~4회 실시함
 - 비축 중인 유효기간 보유물품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긴급구호 현물지원 시 우선지원을 추진하였음
- 유효기간이 있어 사전비축이 어려운 의약품, 정수제 등과 같은 표준 비축물품 이외의 물품은 필요시 상시 조달하였음
 - 특히 의약품은 국별 통관기준, 허용품목 등이 상이하어 적정 품목의 사전비축이 어렵고, 유효기간으로 인한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비축이 까다로운 품목이기 때문에 비축물자 대신 필요시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²²⁾으로 조달을 통해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음

(2)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 수립 시, 유통기한 유무, 지원 실적, 비축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텐트, 천막, 담요’ 위주의 주거(shelter) 및 위생용품 중심의 표준 비축품목이 구성되었으나,
- 코로나19 유행 및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발생 상황 등을 반영하여 주

22)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2014.12.)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

거(shelter) 및 식수위생 물품(WASH) 위주의 비축물자를 추가 구성함²³⁾

- (식수) 수인성 감염병의 유행에 예상되는 자연재해 지역에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식수정화제와 워터백 비축
- (주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담요 비축
- (위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누, 세제, 양동이 등 품목을 선정하며, 물류비를 고려하여 가볍고 부피가 작은 형태의 제품을 비축

○ (비축 횟수 증가) 기존에는 연 4회 지원 기준으로 비축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유행 및 기후재난으로 지속적인 수요발생을 고려, 정해진 지원횟수와 무관하게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 직후 전량 조달을 진행하고 있음²⁴⁾

- 즉, 기존에는 정해진 횟수인 연4회 물품을 비축하였다면,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정해진 횟수와 관계없이 비축된 물자를 활용한 직후 활용한 만큼 전량 조달을 실시하고 있음

<표 2-14> 긴급구호물품 2020년 비축규모(안)

품목		규격	조달 수량
식수접근성 보장	식수정화제	167mg/14,000tablet	42박스
	워터백	1개(10리터)	5,500개
주거환경 보장	중보온 담요	20장/박스	51박스
개인위생 보장	종이비누	20장/1kit	33,000
	접이식 양동이	10L 이상	8,200
	가루세제	1팩	33,000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2020.09.)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

23)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2020.09.) 2020년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

24)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2020.09.) 2020년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

4. 개선이 필요한 부분

1) 비축물자관리와 관련된 체계적 문건 미약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는 비축물자 관리의 책임, 관리 체계 및 운영 체계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20년 1월에 발표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는, 현물지원 관련 항목 아래에 비축물자의 구체적 품목(텐트, 방수포, 담요, 식수정화제 등)을 제시하여 구호물품을 상시 비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무자인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 인터뷰 결과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이 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비축물자관리체계 전반 및 연간 실행계획을 확인할 있는 문건이 부재한 상황임

2) 비축물자의 유효기한 관련 문제

- 국내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 중 텐트, 담요, 물통, 발전기 등의 물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식수정화제의 경우,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유효기간 내에 현물지원을 해야 함
 - 만약 비축물자가 유효기간 내에 현물지원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폐기처리되므로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되지 않도록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의료 물자 비축의 문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없는 물자 위주로 비축하던 기존의 비축물자관리체계 패러다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방역물품을 새롭게 비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 산소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기, 마스크, 방역복 등과 같은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있다면, 이러한 물품을 현물지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 긴급현물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여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의료 관련 물자를 사전에 비축하여 놓을 경우, 기비축해 놓은 의료

- 관련 물자가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가 아니라면, 비축된 물자를 유통기한 내에 활용할 수 없게 됨
- 그러한 경우 유통기한이 도래하면 폐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료물자 비축은 현물지원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폐기로 인한 예산낭비의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제3장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체계 사례조사

제1절 주요국 사례조사

제2절 국내 유관기관 사례조사

제3장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체계 사례조사

제1절 주요국 사례조사

1. 호주

1) 긴급현물지원의 법적 근거

- 호주는 해외 인도적지원 또는 긴급구호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민관 인도적 지원 전문가 파견에 관한 법률(ACC Act, Australia Civilian Corps Act)²⁵⁾은 존재했으나,
 - 현재는 Australia Civilian Corps와 RedR(Registered Engineers for Disaster Relief) Australia²⁶⁾가 통합된 Australia Assists를 통해 인도적 지원 민간 전문가가 파견되고 있음²⁷⁾
- 호주의 중점협력국가인 경우, 국가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의 법적 근거로서 개발협력협약(Development Cooperation Treaties)을 적용함
 - 호주의 중점협력국이 아니며, 별도의 국가 간 개발협력 관련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필요 시 별도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혹은 공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등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보장함

2) 긴급현물지원의 수행주체

- 호주 정부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의 리더로서, 동 지역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분쟁 등에 취약하다는 인식 하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
- 책임기관 및 집행기관은 호주 외교통상부(이하 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임

25) 출처: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6). Humanitarian Strategy.

26) 관련 홈페이지 URL: <https://www.redr.org.au/home>

27) 출처: DFAT (2018), Investment Design, DFAT's Humanitarian Logistics Capability.

- 집행기관인 DFAT은 민간업체인 팔라디움(Palladium)과 “Provision of Humanitarian Logistics Capability Services” 라는 제목으로 5개년 계약 (2018-2023)을 체결하여 인도적 지원에 관한 현물지원을 팔라디움이 담당하게 하고 있음²⁸⁾
 - 긴급상황 시에는 DFAT 외에도 여타 정부기관들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해 팔라디움을 이용할 수 있음
 - 팔라디움은 호주 국방군(ADF, Australian Defence Force), UN, NGOs 및 그 밖의 다른 여러 기관들과 함께 공조하여 위기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⁹⁾,
 - 팔라디움과 계약된 용역(service)은 구호물품 조달과 관련된 “물류 운영 용역(Logistics Operations Services)”을 포함하고 있어서 특정 물품 및 장비의 조달과 물품 및 장비를 운송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도 포함됨
 - DFAT은 팔라디움에게 각 과제별 용역을 요청함
 - 현재 팔라디움은 개인보호장비 및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같은 구호물품을 DFAT의 요청 후 몇 시간 안에 전달하고 있음
 - 팔라디움은 호주 정부의 기존 비축된 구호물품을 보완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전 심사(pre-vetted)³⁰⁾를 거친 공급업체와 계약함
-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 보관창고의 위치가 호주 국방군(ADF) 공군기지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수원국에서 군항공기 입항을 허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방군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현물을 지원함
 - 그러나 군항공기 활용이 실용적이지 않거나 수원국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팔라디움이 민간 운송을 마련하여 현물을 긴급하게 지원하는데 숙련되어 있으므로 팔라디움을 통해 긴급현물지원을 함

3) DFAT의 인도주의적 물류 계약과 관련한 팔라디움의 업무 범위³¹⁾

28) 출처: <https://thepalladiumgroup.com/news/How-Does-the-Australian-Government-Procure-Emergency-Relief-Supplies->

29) DFAT은 이러한 체제를 두고 호주가 인도적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팔라디움이 “매우 중요한 수단(a critical tool)”이라고 언급함.

30) 우리나라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와 유사한 제도로, 미리 자격과 공급능력을 갖춘 여러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공급조건 및 요구사항을 확정하여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수요기관들이 개별적인 입찰절차 없이 간략한 추가 경쟁절차만을 거쳐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제도임.

31) 이하 내용은 DFAT (2018), Investment Design, DFAT’s Humanitarian Logistics Capability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함.

- DFAT과 인도주의적 물류 계약(Humanitarian Logistics Contract)을 맺는 상업적 계약자(commercial contractor)인 팔라디움은 다음 사항들을 업무로 함
 - 인도적 긴급구호 물품(HERS, Humanitarian Emergency Relief Supplies) 및 장비의 조달
 - 기조달된 물품 및 장비의 비축 및 관리
 - 인도적 화물운송 및 배송 물류
 - 파견 지원(Deployment Support)
 - 특별 물류 전문가 및 전문성
 - 영사(Consular) 위기 관리 지원 능력
- 또한 인도적 물류 계약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사항(pillar)을 내포하고 있음
 - **(Pillar 1: 핵심 물류 관리 자원)** 인도적 긴급구호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조달 조언, 비축, 모니터링·평가를 위한 화물 물류 및 창고관리 솔루션 제공
 - **(Pillar 2: 창고 관리 서비스)** 시드니, 브리즈번 및 기타 장소에 위치한 구호 물품 보관 창고 네트워크의 관리
 - **(Pillar 3: 물류 운영 서비스)** 즉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연한 메커니즘으로서, ODA에 해당하는 인도적 대응은 물론, ODA에 해당하지 않은 영사 대응 지원을 포함함

4) DFAT의 긴급현물지원체계 관련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³²⁾

- 해외재난에 대해 현물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이 되면, DFAT은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유관부처들과 일일(daily) 부처 간(inter-departmental) 회의를 주관하며, 관련 해외공관도 회의에 관여됨
 - 이러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동일한 물자를 조달하려고 하는 경우 호주 정부 내에서 “부처 간 경쟁(competing with ourselves)”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최근에는 국방부와 DFAT이 동시에 산소 발생기를 조달하고자 하였을 당시 부처 간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음
- 이때, 해외 인도주의적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유관 부처들 간의 회의

32) 이하 내용은 DFAT의 Humanitarian Response Operations Section에 근무 중인 Nicholas Sergi Assistant Director와의 서면 인터뷰(2021.07.23.)를 재구성함.

를 조정(coordinate)하는 주관 부처(lead agency)는 DFAT이라는 것이 확립된 프로토콜이며, 이는 호주 국방군(ADF이 참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5)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의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체계의 변화 및 애로사항³³⁾

- DFAT은 최근 호주 보건부(Health Department)의 국내 의료 비축물자(National Medical Stockpile)를 활용하여 해외긴급구호 현물지원을 한 바 있음
 - 이러한 경우, DFAT에서 국내 의료 비축물자를 해외긴급구호에 사용한 후, 사용한만큼의 물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호주 보건부에서 수원국에 국내 비축 의료물자를 해외긴급구호에 기증(donate)하기도 함
- DFAT은 최근 평소에 비축하지 않던 의료물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의료물품 조달은 평소에 비축하는 물품들의 조달보다 굉장히 어려웠음
 - DFAT은 팔라디움과의 인도주의적 물류 조달 용역 계약을 근거로 하여 팔라디움이 의료물자 및 기타 물자를 조달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팔라디움은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s)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몇 가지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었음
 - 예를 들어, 팔라디움에서 의료기기를 조달하였는데, 조달한 다음에 알고 보니 이러한 의료기기는 대부분의 사용 환경에서 추가적인 소모품적인 소비재(consumable items)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 있었음
- 따라서 팔라디움과 함께 DFAT은 의료물자 조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함³⁴⁾

33) 이하 내용은 DFAT의 Humanitarian Response Operations Section에 근무 중인 Nicholas Sergi Assistant Director와의 서면 인터뷰(2021.07.23.)를 재구성함.

34)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미확인.

<그림 3-1> 호주 조달 사이트(AusTender) 상 인도주의적 물류 용역 관련 공고문

2021. 5. 20. Closed ATM View - DFAT-120: AusTender

ausTENDER

Home Annual Procurement Plan View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losed ATM View - DFAT-120

Closed ATM View - DFAT-120

Humanitarian Logistics Capability

Contact Details

Contact Officer
Phone: 6216 1111
Email Address: humanitariancapabilities@dfat.gov.au

ATM ID: DFAT-120
Agency: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Australian Aid Program
Category: 93130000 - Humanitarian aid and relief
Close Date & Time: 18-Apr-2018 2:00 pm (ACT Local Time)
Show close time for other time zones
Publish Date: 7-Mar-2018
Location: NSW, QLD, Overseas
ATM Type: Request for Tender

APP Reference: DFAT-120
Multi Agency Access: Yes
Multi Agency Access Type: All Agencies
Panel Arrangement: No
Multi-stage: No

<https://www.tenders.gov.au/atm/ShowClosed/f063216a-96cb-2456-70c1-b6a401b9a2ea?PreviewMode=False>

1. 5. 20. Closed ATM View - DFAT-120: AusTender

Description: The objective of the Humanitarian Logistics Contract is to facilitate timely, effective and flexible delivery of Australian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nd high-quality humanitarian supply chain logistics support.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1

Mandator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1.1 The mandatory conditions for Tenderer participation in this RFT are:

(a) The Tenderer and any subcontractors proposed must not be named as not complying with the *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 (Cth) (*WGE Act*) .

(b) For the purposes of the WGE Act, the Tenderer must identify whether it is a Relevant Employer under the WGE Act and if it is the Tenderer must provide DFAT with a copy of its current letter of compliance with the WGE Act.

(c) Tenderers must acknowledge and agree to contract as a single legal entit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 at **Clause 3** (Threshold Conditions) in this **Part 2** of the RFT.

<https://www.tenders.gov.au/atm/ShowClosed/f063216a-96cb-2456-70c1-b6a401b9a2ea?PreviewMode=False>

출처: 호주 조달 사이트(AusTender). (URL: <https://www.tenders.gov.au/atm/ShowClosed/f063216a-96cb-2456-70c1-b6a401b9a2ea?PreviewMode=False>, 접속일자: 2021.05.20.)

6) 호주의 긴급현물지원체계 관련 시사점

- DFAT은 민간 업체인 팔라디움과 인도적 물류 계약(Humanitarian Logistics Contract)을 체결함으로써 인도적 긴급구호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조달 조인, 물류의 창고관리 서비스 및 물류 운영 서비스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특징적임
- DFAT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도적 현물지원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
- DFAT은 해외긴급구호 시 부처 간 회의를 주관하여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물품을 중복하여 조달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최근 DFAT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물자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팔라디움에

이를 의뢰하긴 하였으나 팔라디움이 의료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의료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팔라디움과 함께 의료물자 조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프랑스

1) 긴급현물지원의 법적 근거

- 공공조달법전(Code de la commande publique)
 - 프랑스의 공공조달법전을 살펴본 결과, 공공조달법전에서 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법률로써 긴급현물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공조달 계약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긴급상황(urgence impérieuse)을 규정³⁵⁾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에 대한 임박한 위협의 경우(공중보건법 제L. 1311-4조)” 입찰 공고와 경쟁입찰이 선결조건이 되지 않는 공공계약의 체결이 가능함
- 국제연대 및 개발정책의 방향 및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LOI n° 2014-773 du 7 juillet 2014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politique de développement et de solidarité internationale, 이하 2014년 국제연대 및 개발법)
 - 국제연대 및 개발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포된 법임
 - 동 법의 채택은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국제협력 관련 시민단체 및 비정부 기구의 요청이 있어 왔으며,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공적개발원조 정책 채택 과정의 투명성과 분산되어 있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음
 - 공적개발원조 분야 전체를 규율하는 규정으로는 처음으로 ‘법’으로 채택된 규범이며, 프랑스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목적, 원칙을 설명하고 다양한 수행기관의 역할 그리고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3-1> 프랑스 2014년 국제연대 및 개발법의 주요 내용

[목차]

- 제1편. 프랑스의 국제 연대 및 개발정책의 방향
 - 제1장. 국제 연대 및 개발정책의 목적
 - 제2장. 일관성과 상보성(complémentarité)

35) 출처: <https://www.economie.gouv.fr/daj/urgence-dans-contrats-commande-publique-2019>

제3장. 효율성과 원칙
제2편. 전문기술의 국제지원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제4편. 이행, 평가 및 보고
부속서
서론
1. 국제 연대 및 개발정책의 목적 및 당면 과제
1.1 프랑스 국제 연대 및 개발 정책의 목적
1.2 공통 당면과제
1.3 협력분야
1.4 중점협력과제
1.5 국제 연대 및 개발 정책의 운영체계
2. 개발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2.1 유럽 내에서 프랑스 분야별 정책의 일관성
2.2 국제 연대 및 개발 정책의 실효성
2.3 국제 연대 및 개발 정책의 투명성 및 적격성(recevabilité)
3. 프랑스의 국제 연대 및 개발 정책의 실행 수단
3.1 정부의 협력 활동
3.2 비정부기구의 협력 활동
4. 개발 자원
4.1 공공 개발 자원 수단
4.2 국내 자원 확대
4.3 민간 개발 자원
4.4 혁신적 자원
첨부1. 약어 목록
첨부2. 성과지표 매트릭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주요국의 ODA 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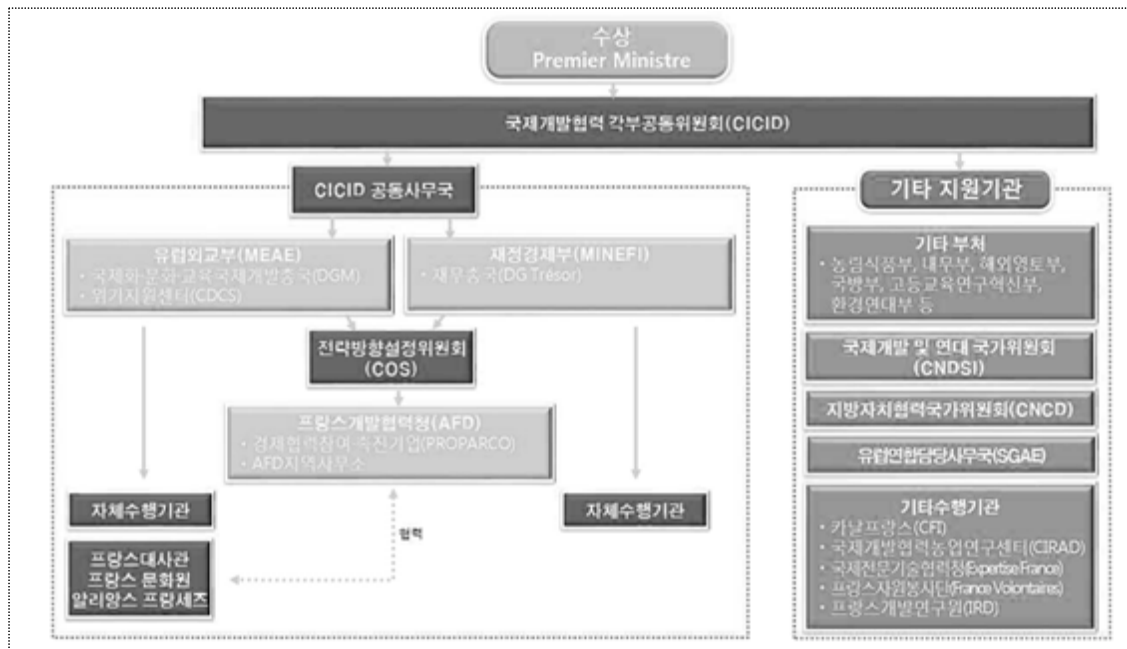
- 한편, 2014년 국제연대 및 개발법 부속서 ‘3.1 정부의 협력 활동’에는 국제 연대 활동에 있어서 외교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음
 - 외교부는 가장 취약한 지역의 구성원에 대한 거버넌스와 직접적 지원에 있어 우선적인 연대 기금의 예산(crédits)을 직접 관리하는데, 특히 식량 지원과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을 위한 기금이 여기에 해당함
 - 즉, 외교부가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을 위해 직접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현물지원의 근거로 볼 수 있음

2) 긴급현물지원의 수행 주체

(1) 프랑스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수행체계

-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주된 정책 방향은 개발협력을 위한 각부공동위원회(CICID, 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coopération et développement)에서 결정함
 - 정책안은 CICID에서 결정되기 전에 먼저 국제 연대 및 개발 국가 위원회 (CNDSI, Le Conseil National du Développement et de la solidarité internationale)와 상원회의·하원회의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침
 - 집행과 관련된 업무는 유럽외교부와 재정경제부 두 기관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음
- 참고로 프랑스의 ODA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음³⁶⁾
 - 국제개발협력각부공동위원회(CICID): 개발협력을 위한 주된 정책 방향을 결정함
 - 2개의 중심 부처: 유럽외교부(MEAE), 재정경제부(MINEFI)
 - 프랑스 개발협력청(AFD) : 결정된 정책을 직접 수행함

<표 3-2> 프랑스의 ODA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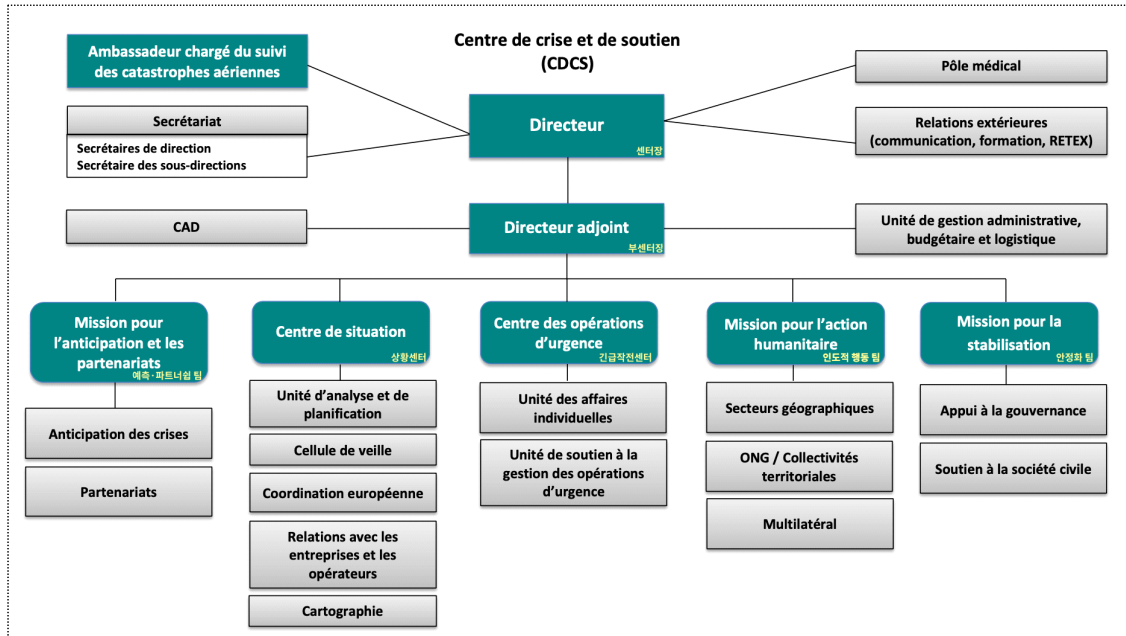
출처: 김덕수 (2019). 프랑스의 아프리카 농업 ODA정책과 시사점.

(2) 프랑스 개발청(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36) 김덕수 (2019). 프랑스의 아프리카 농업 ODA정책과 시사점.

- 1998년 프랑스개발기금(Caiss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은 프랑스개발청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함
- AFD는 프랑스 공적개발원조 집행의 중심 수행기관으로서, 무상원조와 유상 원조를 모두 집행하고 협력대상국도 최빈국에서 신흥개도국까지, 아프리카에서 전 지역으로 업무 영역이 확장됨
- AFD의 경우, “코로나19 - 공동의 보건”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보건 위기 및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는 데 지원³⁷⁾을 하고 있으며, 현물 지원은 주로 위기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3> 프랑스 위기지원센터의 조직도



자료: 프랑스 유럽외교부 자료 재구성.

(3) 위기지원센터(CDCS, Centre de crise et de soutien)

- (개요) 2008년 외교부 내에 설립되었으며 리스크 및 위협 발생 가능성을 주시하고 위기상황 시 긴급 구조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임무를 맡고 있음

37) 출처: <https://www.diplomatie.gouv.fr/fr/politique-etrangere-de-la-france/developpement/evenements-et-actualites-sur-le-theme-du-developpement/evenements-et-actualites-sur-le-theme-du-developpement-2020/article/la-france-lance-via-l-afd-l-initiative-covid-19-sante-en-commun-pour-soutenir>

- 2012년 7월 6일 채택한 『프랑스 인도주의 전략(la Stratégie humanitair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과 2007년 12월 유럽연합 이사회·의회·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유럽 합의(le Consensus européen sur l'aide humanitaire)』 에서 명시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겠다는 원칙하에 활동하고 있음
- CDCS는 행정적 성격의 공공기관으로, 2008년 외교부 2개의 부서(해외 프랑스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와 인도주의적 행동을 담당하는 부서)의 결합으로 탄생함
- (예산) CDCS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인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을 위한 기금(FUH, le Fonds d'urgence humanitaire)은 공적개발원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동 기금은 물자 지원, 외교관 및 영사단의 활동 지원, NGO 보조금, 국제기구와의 특별 분담금 지급에 활용되고 있으며 연간 약 1,200만 유로에 달함
 - 위지원센터는 외교부의 주요 긴급 인도적 구호 수행 기관으로,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을 위한 기금(FUH, le Fonds d'urgence humanitaire)을 이용하여 위급 상황에서 현금 혹은 현물 지원을 함
 -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NGO에 자금을 조달하며, 주기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음
- (역할 및 미션) 해외 위기상황 발생시 프랑스 거류민을 보호하고, 프랑스의 인도적 활동을 총괄하여 현지 국민에게 도움을 제공함
 - 국민을 위해 불침번을 서며,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함
 - 국외의 위기 관리
 - 국외의 프랑스인 보호, 개발 사안에 대한 도움
 - 의료적, 심리적 전문성 제공
 - 프랑스의 인도적 활동 관리
 -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국가의 안정화(stabilisation)
 - 국가, 조직, 기업들을 수행

3) 프랑스 정부 부처 간 인도적 비상상황 시 공조(coordination)

- 공중보건청(SpF, Santé publique France)의 경계위기국(Direction Alerte et Crises)은 위기지원센터(CDCS)와 협력하고 있음
 - 공중보건청은 프랑스 보건부의 감독을 받는 2016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위기 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보건용품 발송이나 보건인력 파견(déploiement)을 촉진함
 - 재외 프랑스인의 보호 및 본국 송환이 우선순위에 있으나, 예를 들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경우 인도적 지원을 요청 받아 참여하기도 함
- 2020년 공중보건청과 위기지원센터 간 협약으로, 공중보건청 내에 보건분야 전문 예비인력(réserviste)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가 국제구호활동에 배치될 수 있게 됨³⁸⁾
 - 위기지원센터(CDCS)는 프랑스 보건부와 맺은 합의(accords)를 바탕으로 하여 위기지원센터가 보건물자 및 보건용품을 즉시 발송하고 재고를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고 있음³⁹⁾
 - 물자는 파리 지역에 비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부상자 500명을 돌볼 수 있는 몇몇 로트(lot)의 의약품 5.5톤이 포함되어 있음⁴⁰⁾

4) 프랑스의 긴급현물지원체계 관련 시사점

- 프랑스는 프랑스 개발청(AFD)에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물지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위기지원센터(CDCS)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프랑스는 위기 상황에서 위기지원센터와 보건부의 감독을 받는 공중보건청이 2020년 협약을 맺어 두 기관의 협업하여 해외에 보건인력을 파견하는 활동을 함
- 우리나라도 의료기기, 방역물품 등과 같은 보건용품에 한하여 KOICA가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ODA 사업부 등과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 관련 전문기구와 협약을 맺고 해외에 보건용품 현물지원 시 협업하는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38) 출처: https://www.diplomatie.gouv.fr/IMG/pdf/eval_fuh_rapport_final_cle0f72b8.pdf의 보고서, “Evaluation du Fonds d’Urgence Humanitaire 2015-2018”, p.49.

39) 출처: 프랑스 위기지원센터(CDCS) 직원과의 이메일 서면 인터뷰(2021.07.27.) 내용.

40) 출처: 프랑스 위기지원센터(CDCS) 직원과의 이메일 서면 인터뷰(2021.07.27.) 내용.

제2절 국내 유관기관 사례조사

1. 파주시

1) 파주시의 긴급현물지원 사례

(1) 해외 자매(교류)도시인 영국 글로스터시에 방역물품 1,000 세트 지원

- 파주시는 해외 자매(교류)도시인 영국 글로스터(Gloucester)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신 방호복 세트 1,000벌을 2020년 4월에 지원함
 - 당시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서며 4월 23일자 기준 확진자 138,078명, 사망자 18,738명이었으며 글로스터시를 주도로 하는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주의 확진자는 970명, 사망자는 140여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음
 - 또한 당시 영국 전역에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상태로 모든 수업과 종교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임
- 파주시는 글로스터시의 방역물자 지원 요청을 받고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과 인도적 차원에서 방역물품을 보내기로 결정함
 - 특히 글로스터시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설마리 임진전투에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글로스터 대대’가 있는 도시로서, 글로스터 대대의 대한민국을 위한 공헌에 대한 보은 차원의 지원이기도 했음

(2) 방역물품 현물지원 체계

-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국제협력팀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당시 파주시의 현물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 파주시의 자매도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 위치해 있는데, 파주시 시장이 자매도시에 지원하겠다는 지시를 내림
 -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소통창구로는 한국 친선협회 담당자(민간인)와 글로스터 군인 박물관 담당자가 있었음
 - 처음에 영국에 지원 의사를 밝혔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나쁘지 않아 지원 요청이 없었다가 나중에 영국의 상황이 심각해져서 지원을 요청함
 - 초기에는 마스크를 지원하려고도 하였으나, 국가별로 표준이 다르다는 점,

- 우리나라도 마스크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하여 방역복과 장갑 1,000세트를 보내기로 결정함
- 그러나 수취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음. 파주시는 글로스터 군인 박물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현물지원의 수취인을 글로스터시가 아니라 글로스터 군인 박물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
 - 긴급한 상황이라 단일한 업체가 있는 경우로 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을 처리하였음 (단, 다른 업체의 견적도 받기는 하였음)
 - 로지스틱 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한 공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 관련 협조’를 활용함
 - 본 공문에 의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진단시약, 소독제, 마스크 등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3에 따라 재해 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사 제외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음
 - 파주시청은 이러한 행정안전부 공문을 토대로 영국 글로스터시에 현물지원하는 방역물품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보임
 - 물품 구입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사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운송까지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총 3,5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 물류비용이 몇 백만원일 정도로 예상보다 많이 들었음
 - 글로스터 군인 박물관에서는 물품을 운송 받아서 글로스터에 있는 요양원에 방역물품을 배포함

(3) 담당자가 느꼈던 애로사항

-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국제협력팀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현물지원을 함에 있어서 비축된 물자가 아닌 물품을 조달해서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밝힘
 - 영국 글로스터시에 물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다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가용 가능한 예산이 어디 있는지 파주시청 내에서 알아보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음
 - 국내에서도 방역물품을 요구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로 요청하였고

- 또한 해외에 배송함에 있어서 비행기 스케줄을 알아봐야 한다는 점, 항공 운송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운송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 등이 애로 사항으로 꼽혔음

- 파주시는 현물지원을 위해 물품을 조달해야 했는데 로지스틱 회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로지스틱 회사가 물품을 구입하는 동시에 해외 운송을 담당함
- 파주시의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를 사전에 마련 및 검토하여 긴급 현물지원 필요 시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료: 파주시 자치행정과 국제협력팀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공문

제 4 장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체계 사례조사

제1절 주요국 사례조사

제2절 국제기구 사례조사

제4장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체계 사례조사

제1절 주요국 사례조사

1. 호주

1) 비축물자관리의 수행주체

- 앞에서 긴급현물지원체계에 관하여 살펴본 대로, DFAT과 인도주의적 물류 계약(Humanitarian Logistics Contract)을 맺은 상업적 계약자(commercial contractor)인 팔라디움에서 인도적 긴급구호 물품(HERS, Humanitarian Emergency Relief Supplies) 및 장비의 조달 및 조달된 물품 및 장비의 비축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2) 비축물자관리 창고의 위치 및 관리

- 호주는 시드니, 브리즈번 등 자국 내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창고도 보유하고 있음
 - 브리즈번 창고는 5,000m²의 규모이며, 시드니 창고는 300m²의 규모로, 브리즈번 창고에는 45,000명을 위한 물자가 비축되어 있으며, 시드니 창고에는 5,000명을 위한 물자가 비축되어 있어 두 창고를 합하여 50,000명(5인 가족 기준 10,000 가족)분의 물자가 비축되어 있음
 -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파푸아뉴기니의 라에(Lae) 및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Port Moresby)에 창고가 있음
- 브리즈번과 라에 창고는 인도적 파트너십 협약(Humanitarian Partnership Agreement)의 모든 협약 당사자 및 적십자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브리즈번의 창고는 UN 파트너와 WFP(World Food Program)를 위해서도 공간을 할애하고 있음
- 호주는 UNHRD(UN Humanitarian Relief Depot)의 창고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와 일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대비 가치(value for money)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인 팔라디움을 다른 옵션에 비해 선호하고 있음

-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특화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팔라디움의 장점이 강력하기 때문에 UNHRD를 활용하기보다는 팔라디움을 이용하고 있음
- UNHRD 네트워크 멤버십을 유지하는 데에도 분명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UNHRD의 다섯 개의 창고(deopt)에도 호주는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음
 - UNHRD 창고를 활용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을 벗어나 호주의 인도적 공급사슬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여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또한 UNHRD 네트워크 멤버십을 유지함으로써 사용가능한 물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증가한다는 장점도 있음

3) 비축하고 있는 물자의 종류

- DFAT의 비축창고에서 비축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물자의 종류는 크게 식수, 에너지, 주거로, 해외 재난 발생시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물자가 비축되어 있음
-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제공
 - 개인(individual)용 및 가족(family)용 물 저장고(storage buckets) 및 접이식 컨테이너(collapsible containers)
 - 개인용 및 가족용 식수정화제(Aquatabs)
 - 가족용 위생 키트(비누, 화장실 휴지 등)
 - 마을(communitiy)용 물 블래더(bladder) 탱크 및 디젤/석유 펌프 키트
 - 마을용 디젤 슬러지(sludge) 펌프
- 자가발전장치
 - 개인과 가족을 위한 태양광 발전 토치(torches)와 랜턴
 - 가족과 마을을 위한 석유 및 디젤 발전기
- 안전한 임시 주거 옵션
 - 모기장, 담요, 텐트, 타포린(tarpaulins), 주거 수리 공구 키트(tool kit) 등

<표 4-1> 호주 DFAT의 인도적 지원 비축물자

			
위생 키트	식수정 화제	슬러지 펌프	물 블래더
			
석유 발전기	디젤 발전기	태양광 램프	
			
주거 도구 키트	임시 주거		

출처: DFAT (2016). The Humanitarian Supplies Challenge.

4) 비축물자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범위

- 인도적 물류 계약(Humanitarian Logistics Contract)상 기초달된 물품 및 장비의 보관 및 관리의 업무 범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 DFAT의 긴급구호 창고 및 다른 창고 시설의 관리
 - 입고 작업(물품 인수, 짐 내리기, 짐 쌓기) 및 출고 작업(짐 적재 및 발송)
 - 인벤토리 관리 및 보고
 - 구호물자의 비축 보험(stockholding insurance)
 - 보안
 - 정기적 비축물자 관리
 - DFAT 지침 및 운송 요건에 따른 포장 및 물품을 팔레트로 재구성하는 (palletising) 작업
 - 유통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구성부품의 대체(replacement)

- DFAT의 창고 이용 파트너(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AHP), 적십자사, UNFPA, WFP 등)을 위한 창고 서비스 제공
- 공여국 간 조정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DFAT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공여국에 구호 물품 및 장비 대여(loan)

5) 호주의 비축물자 유통기한 관리 방안⁴¹⁾

- DFAT은 전통적으로 유효기한(expiration date)이 있는 물자의 비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나, 위생 키트 내에 있는 치약이나 세제(washing powder)는 유통기한(best before date)이 기재되어 있음
 - 유통기한은 인도적 비축물자 관리를 위해 계약된 물류 공급업체인 팔라디움이 사전에(in advance) 유효기한이 가까워진 물자가 있음을 DFAT에 통보하면, DFAT 유관과(Humanitarian Resource Operations Section)에서 이를 폐기하고 대체할 물품을 조달(sourcing)하도록 팔라디움에 지시함⁴²⁾
 - 호주 정부는 팔라디움이라는 전문적인 물류 기업과의 계약으로 인하여 비축물자를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팔라디움은 유통기한이 짧은(shorter useable life left) 물자를 먼저 지원하도록 하여 기한이 도래한 물자(out of date goods)를 재난지역에 배포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또한 DFAT은 비축물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선입선출(FIFO, First In First Out)의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비축물자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팔라디움의 관리 책임 하에 두고 있음

6)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의 비축물자관리체계의 변화⁴³⁾

- DFAT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로 주거와 위생에 대한 물자를 비축해왔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거, 위생, 식수 등과 같은 기본적인 비축물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의료물자도 일부 조달하여 비축

41) 이하 내용은 DFAT의 Humanitarian Response Operations Section에 근무 중인 Nicholas Sergi Assistant Director와의 서면 인터뷰(2021.07.23.)를 재구성함.

42) 호주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물자의 기부(donation)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43) 이하 내용은 DFAT의 Humanitarian Response Operations Section에 근무 중인 Nicholas Sergi Assistant Director와의 서면 인터뷰(2021.07.23.)를 재구성함.

하기 시작하였음⁴⁴⁾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DFAT은 산소와 관련된 물자(oxygen related supplies)를 비축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비축한 의료물자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호주의 비축물자관리체계 관련 시사점

- 호주는 비축물자관리를 민간 상업 업체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인도적 목적의 긴급현물 조달에서부터 비축물자관리를 하나의 업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적임
- 호주는 비축물자관리를 민간 계약 업체인 팔라디움에 맡기고 있어 별도의 표준운영절차(SOP)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팔라디움은 선입선출(FIFO)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shorter useable life left) 물자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새로운 물자(newer items)보다 먼저 배포하도록 함
- 또한 호주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비축물자는 위생 키트, 식수정화제, 슬러지 펌프, 물 블래더, 발전기, 태양광 램프, 주거 도구 키트, 임시 주거 등으로 대부분 주거 및 위생에 관한 것이며 유통기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위생 키트 내의 치약, 세제 및 식수정화제 등임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물자를 비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전통적으로는 보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유효기간이 지정된 의료물자 등은 비축물자로 호주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비축물자에서 벗어나 산소와 관련된 물자(oxygen related supplies) 등 일부 의료물자를 조달하여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품을 비축물자로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비축하게 된다면 어떤 물품을 비축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44) 의료물자 비축은 복잡한 문제이며, 적절한 물자를 신속하게 조달하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 사안임.

2. 일본

1)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담당 주체

- 일본은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법과 같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해외긴급구호 시 현물지원 및 물자비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법(이하 JICA 법)을 바탕으로 함
 - JICA법 제3조는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는 개발도상에 있는 해외지역(이하 ‘개발도상국’이라 함)에 대한 기술협력을 실시, 유상 및 무상 자금 공여에 의한 협력의 실시 및 개발 도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등의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중략) 개발도상국 등 대규모 재해에 대한 긴급 원조의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중략)”라고 설립목적을 언급함
 - JICA법 제13조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국제 긴급 원조 활동(「JDR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말함) 및 기타 긴급 구호를 위한 장비 및 기타 물자를 비축하거나 공여한다”라고 JICA에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물자 비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JICA법 제13조 제2항 제2호는 “국제 긴급 원조대 파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 긴급 원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물자의 조달, 운송 주선 등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여 JICA가 긴급현물지원을 담당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2) 해외긴급구호 시 비축물자관리체계

- 해외긴급구호 현물지원 및 비축물자관리의 주체인 독립행정법인 일본 국제협력기구(이하 JICA)는 피해지역의 요구에 맞는 원조물자를 제공하고 있음
 - 피해지역의 구호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JICA는 긴급구호물자를 공여하고 있는데, 긴급구호 물자는 총 6개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 지역의 요구에 맞게 제공되고 있음
 - 6개 품목은 텐트, 슬리핑패드, 담요, 폴리에틸렌제 물탱크, 플라스틱 시트, 정

수기이며 이 외에도 정수 그릇, 발전기 등을 긴급원조 물자로 공여하기도 함
- 식료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사용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물자는 긴급원조물
자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⁴⁵⁾

<표 4-2> 일본 JICA의 국제 긴급 원조를 위한 비축물자

		
텐트	매트리스(슬리핑패드)	담요
		
폴리에틸렌제 물탱크	플라스틱 시트	정수기

출처: JICA 홈페이지(URL: <https://www.jica.go.jp/dr/about/supply.html>, 접속일자: 2021.07.09.)

- JICA가 비축하고 있는 긴급원조물자는 싱가포르(싱가포르), 마이애미(미국), 두바이(UAE), 아크라(가나)⁴⁶⁾, 마주로(마셜 제도)⁴⁷⁾, 코로르(팔라우)⁴⁸⁾에 있는 6개의 창고를 활용하고 있음⁴⁹⁾

45) 출처: JICA의 JDR에서 emergency relief in-kind assistance를 담당하는 Tatsuya HADA 담당자와의 서면 인터뷰 (2021.07.27.).

46) 세계식량계획(WFP)이 운영하는 유엔 인도주의 물자 비축고(UNHRD, UN Humanitarian Response Depot)

47) 현지 국가를 위해 설치된 현지 비축창고로, 현지 비축창고에서 다른 나라로 물품을 방출하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음.

48) 현지 국가를 위해 설치된 현지 비축창고로, 현지 비축창고에서 다른 나라로 물품을 방출하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음.

49) 비축규모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질문한 결과, 창고의 면적, 물품의 개수, 총 비축 규모(액수)는 대외 공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3) 2020-2021년 비축물자를 활용한 일본의 인도적 지원 내역

- JICA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비축물자를 활용한 해외현물지원 내역은 202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2020년 9건, 2021년 4건으로 집계됨
 - 코로나19로 인한 JICA의 해외 인도적 지원내역은 별도의 페이지에 뉴스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며, 비축물자를 활용한 지원이 아니라 물품을 신규 조달하여 해외에 공여한 것으로 보임(부록 5 참조)⁵⁰⁾

<표 4-3> JICA의 2020-2021 비축물자 활용 해외 인도적 지원 내역

구분	날짜	국가	재난의 유형	제공 물자	활용한 비축창고
1	20.08월	레바논	대규모 폭발	• 텐트 • 담요 • 플라스틱 시트 • 슬리핑 패드 • 폴리 탱크 • 정수기	JICA 두바이 창고
2	20.09월	수단	홍수	• 텐트 • 슬리핑 패드 • 발전기	JICA 두바이 창고
3	20.09월	니제르	홍수	• 텐트 • 담요 • 플라스틱 시트 • 폴리 탱크 • 정수기	JICA 두바이 창고
4	20.10월	베트남	태풍	• 플라스틱 시트 • 정수기	JICA 싱가포르 창고
5	20.10월	캄보디아	홍수	• 텐트 • 정수 그릇 • 담요 • 발전기 • 플라스틱 시트 • 슬리핑 패드 • 폴리 탱크	JICA 싱가포르 창고
6	20.11월	니카라과	허리케인	• 텐트 • 담요 • 플라스틱 시트 • 슬리핑 패드 • 폴리 탱크 • 정수기	JICA 마이애미 창고
7	20.11월	온두라스	허리케인	• 텐트	JICA 마이애미 창고

50) JICA 홈페이지 COVID-19 협력·실적 목록(URL: <https://www.jica.go.jp/COVID-19/ja/responses/action/index.html>, 접속일자: 2021.07.14.)

구분	날짜	국가	재난의 유형	제공 물자	활용한 비축창고
				• 담요 • 플라스틱 시트 • 슬리핑 패드 • 폴리 탱크 • 정수기	
8	20.11월	과테말라	허리케인	• 담요 • 슬리핑 패드	JICA 마이애미 창고
9	20.11월	콜롬비아	허리케인	• 텐트 • 담요 • 슬리핑 패드 • 폴리 탱크	JICA 마이애미 창고
10	21.4월	동티모르	홍수	• 담요	JICA 싱가포르 창고
11	21.4월	팔라우	태풍	• 폴리 탱크 • 정수기 • 발전기	JICA 팔라우 창고
12	21.4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화산 폭발	• 담요 • 간이 수조	JICA 마이애미 창고
13	21.6월	콩고민주 공화국	화산 폭발	• 텐트 • 플라스틱 시트 • 폴리 탱크 • 정수기	JICA 두바이 창고

출처: JICA 홈페이지의 자료 재구성(URL: <https://www.jica.go.jp/information/jdrt/2020/index.html>, URL: <https://www.jica.go.jp/information/jdrt/2021/index.html>, 접속일자: 2021.07.09.)

4) 일본의 비축물자관리체계 관련 시사점

- 일본 JICA는 가나 아크라에 위치한 UNHRD의 창고를 포함하여 싱가포르(싱가포르), 마이애미(미국), 두바이(UAE), 마주로(마셜 제도), 코로르(팔라우)에 있는 6개의 해외 창고에 긴급구호물품을 비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본 JICA는 전 세계에 비축창고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비축물자를 긴급지원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0년과 2021년 JICA가 홍수, 태풍, 허리케인, 화산 폭발 등의 해외재난에 대하여 현물을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수원국이 남미인 경우 JICA 마이애미 창고, 수원국이 중동인 경우 JICA 두바이 창고, 수원국이 동남아시아인 경우 JICA 싱가포르 창고에 비축된 물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 비축하고 있는 품목은 텐트, 슬리핑패드, 담요, 폴리에틸린제 물탱크, 플라스틱 시트, 정수기이며 이 외에도 정수 그릇, 발전기 등을 긴급원조 물자로 공여하고 있기도 함
- 2020년 9건 및 2021년 4건으로 집계된 해외긴급구호 시 비축물자를 활용한 현물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비축물자로 의료물자나 식품과 같이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보다는 유통기한이 없는 주거용 물자를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이와 같이 6개의 해외 창고를 운영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한 각 지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다수의 해외 창고를 운영함에 따라 국내 창고만 운영했을 때에 비해 창고 관리 및 비축물자 관리 비용이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음
- 해외에 여러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코로나19 관련 현물지원 내역은 물품을 신규 조달하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부록 5 참조)
- 또한 일본은 비축물자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통기한이 없는 물품을 위주로 비축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비축물자는 필연적으로 유통기한 내에 수원국에 지원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한다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물자를 비축하고자 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고 있음

제2절 국제기구 사례조사

1. UNHCR

1) 관련 규정 상 근거

- UNHCR에서 2015년에 발행된 UNHCR Emergency Handbook⁵¹⁾은 UNHCR 비상시 운영 관련된 사항의 내용을 담은 핸드북임
 - 이 핸드북은 UNHCR의 비상 운영체제 및 인력 활용 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UNHCR의 관리 절차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대부분의 핸드북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 비상 운영을 위한 파트너와 기타 이해관계자(other interested parties)가 핸드북 내용에 접근할 수 있음
 - 다만 핸드북의 일부 섹션(section)은 내부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UNHCR 직원이 UNHCR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로그인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음
- UNHCR은 2017년에 비상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정책(Policy 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을 새롭게 도입함
 - 이는 UNHCR의 2017-2021 전략 방향에 따라, 비상 대비 및 대응에 대한 UNHCR의 참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⁵²⁾
 - 특히, 비상시 대비에 대한 부분의 초점을 강화 및 인적, 재정 및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단순화하였음

2) 집행 및 관리기관

- UNHCR의 비상, 안보 및 공급 부서(DESS, Division of Emergency, Security and Supply)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 운영 지원, 자원 사용 계획 및 보고 등을 담당함. 또한, 현장 운영, 창고, 비축 물품, 차량(fleet) 및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과 용역의 조달도 포함함⁵³⁾
 - DESS의 주요 목표는 비상사태일 경우와 그 외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최적의 지원 제공과 효과적인 비상 대응 관리를 통해 보호 대상자들을

51) 출처: <https://emergency.unhcr.org/> (UNHCR Emergency Handbook 4th Edition)

52) 출처: <https://emergency.unhcr.org/entry/124201/policy-on-emergency-preparedness-and-response#5,1623645862357>

53) 출처: <https://www.unhcr.org/become-a-supplier>

지원하는 것임⁵⁴⁾

○ DESS는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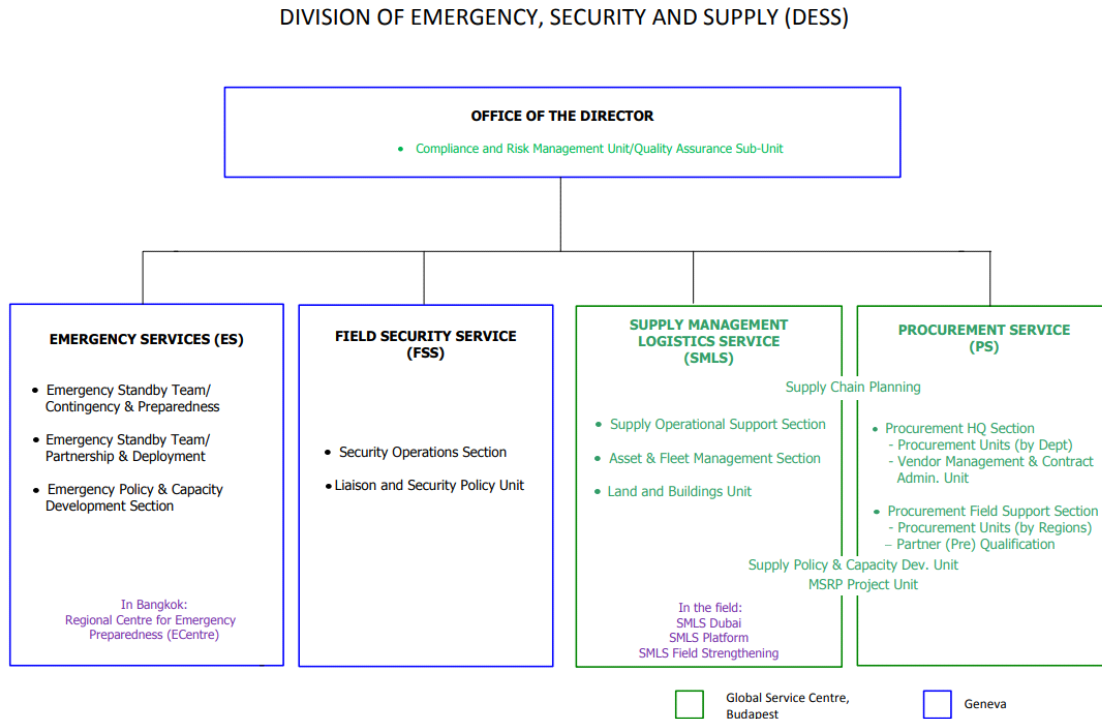
- The Emergency Service(ES)은 UNHCR의 비상 대비 및 대응 역량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짐
- The Field Security Service(FSS)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위험 관리 관행을 바탕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함
- The Supply Management Logistics Service(SMLS)은 부다페스트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 센터(GSC, Global Service Centre)에 있으며, 보호 대상자에게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함. 또한, UNHCR 운영 전반에 대한 공급 지원을 강화할 책임을 지며, SMLS는 UNHCR의 글로벌 비축 관리 시스템(Global Stock Management System)의 관리자임. SMLS안에 있는 The Supply Operational Support Section(SOSS)에서는 pre-emergency 비축 계획, 글로벌 및 지역적으로 비축량의 레벨을 최적화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함. 또한, 두바이(UAE), 코펜하겐(덴마크), 이사카(탄자니아), 아크라(가나), 두알라(카메룬), 나이로비(케냐), 암만(요르단) 등에서 공급 수요 평가와 창고, 글로벌 비축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The Procurement Service(PS)은 부다페스트 GSC에 위치했으며, 글로벌 조달 업무를 담당함

○ DESS에서는 UNHCR 내 모든 조달 및 공급 활동을 조정하며, 긴급 대응 시 UNHCR에서 72시간 안에 최대 600,000명에게 핵심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또한 긴급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긴급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 UNHCR 비상 명단에 있는 직원은 72시간 이내에 동원될 수 있음⁵⁵⁾

54) 출처: UNHCR(2015), Headquarters (<https://www.unhcr.org/5461e60f0.pdf>)

55) 출처: <https://www.ungm.org/Shared/KnowledgeCenter/Pages/UNHCR>

<그림 4-1> UNHCR 비상, 보안 및 공급 부서 조직도



출처: <https://www.unhcr.org/admin/execoffice/4bffd1c89/division-emergency-security-supply-dess.html> (검색일: 2021.06.09.)

3) 비축물자 관리체계 관련 절차·매뉴얼 등

(1) UNHCR 핵심구호물품 품목 카탈로그(UNHCR Core Relief Items Catalogue)

- UNHCR 핵심구호물품 카탈로그는 물품의 요구사항을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게 전달하는 도구이며, 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물품의 기본 특성인 기능 사양, 제품의 기술적 및 물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총 13개의 제품에 대한 사양 및 품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크게 주거 물품(Shelter Items)과 가사 물품(Domestic Items)에 대한 정보를 동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함
 - 주거 물품으로는 텐트, 강화 플라스틱 타포린(Reinforced Plastic Tarpaulins)가 있으며, 가사 물품으로는 모기장, 담요, 합성 슬리핑 매트(Synthetic Sleeping Mats), 위생천(Cloth for Sanitary Material), 플라스틱 양동이(Heavy Duty Plastic Bucket), 주방 세트(Kitchen Set), 반접이식 제리캔(Semi-Collapsible Jerry can) 등이 있음

- 동 카탈로그에 내용은 핵심구호물품의 기술 사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실험실 테스트, 제품의 보관 유효기한, 로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함
 - 특히 기술 사양 관련 부분에서는, 어떠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는 지 최솟값과 주요 규격에 대한 사양들을 확인할 수 있음(용량, 무게, 성분, 작동 온도, 평균 두께, 충격 저항/강하 테스트 등)

<그림 4-2> 핵심구호물품 카탈로그 품목 예시(반접이식 제리캔)



출처: UNHCR(2012), Core Relief Items Catalogue, p.42.

(2) 핵심구호물품 품질 관리(Core Relief Items Quality Management)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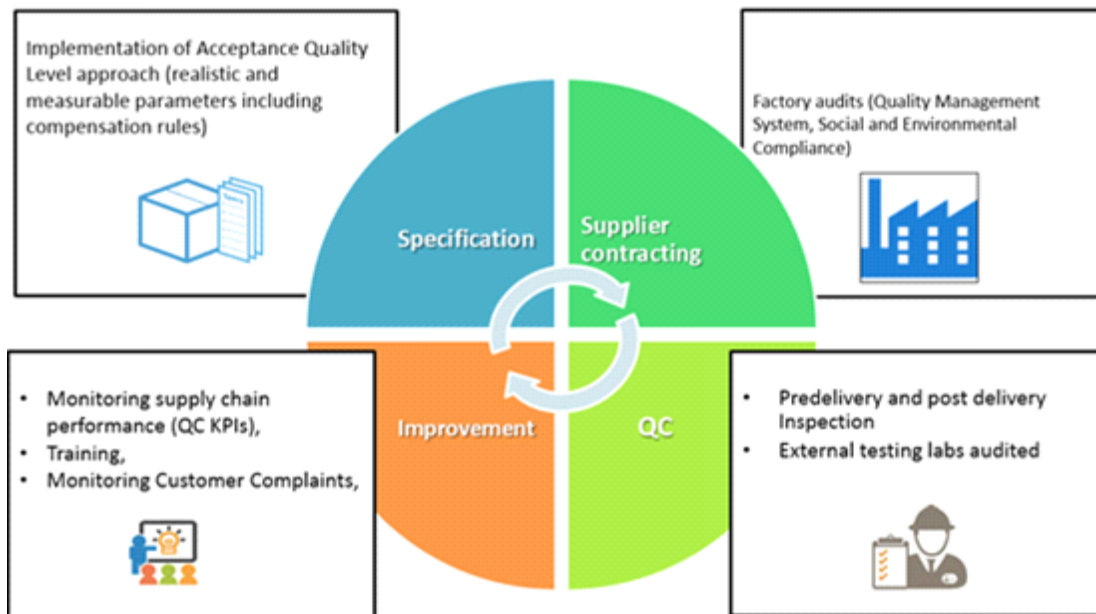
- UNHCR 보호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또는 현지에서 조달한 물품의 경우는 가격대비 성능이 좋으면서, 동시에 UNHCR 기술 기준(Technical Requirements)을 준수해야 함
 - 품질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목표는 UNHCR의 조달 서비스(Procurement Service)의 고객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적시에 좋은 품질의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임
 - Quality Unit에서는 UNHCR의 내부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여

56) UNHCR, Emergency Handbook 4th Edition: Quality management for Core Relief Items(CRIs)

러 도구, 문서, 지침을 포함하는 구호 물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UNHCR 주요 창고인 두바이, 나이로비, 두알라, 암만에 4개의 품질관리 센터(Quality Control Centers)가 설립되었으며, 이곳에서 구호 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고, UNHCR 현장 사무소의 조달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와 도구들이 있음

<그림 4-3> 핵심구호물품(CRIs) 품질관리 시스템



출처: UNHCR Emergency Handbook 4th Edition

(3) UNHCR 창고 공간 기준⁵⁷⁾

- 창고의 크기는 한 번에 그곳에 보관될 최대 공급량 (톤수 및 수량)에 따라 결정됨
-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관 조건(Storage Requirements)을 계산할 때, 창고 표면 용량의 70%-80%만 실제로 보관할 수 있다고 가정함. 그 외 나머지 20-30%는 환기, 통로, 취급 공간 및 재포장 구역으로 사용됨
 - 제품 종류와 포장에 따라 Stack의 최대 높이가 달라짐
 - 바닥 하중 과다 및 포장재 또는 물품의 압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Stack의

57) 출처: <https://emergency.unhcr.org/entry/45961/warehouse-space-standards>

크기는 6mX6m이하로 제한함

(4) UNHCR 창고 및 재고 관리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⁵⁸⁾

- 동 문서는 창고와 UNHCR 사무소의 공동 책임, UNHCR 사무소의 주요 책임, 창고의 주요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음
- 창고⁵⁹⁾ 및 재고 관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물품의 안전한 수령 및 신속한 배송 보장
 - 재고의 이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
 - 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물리적, 예약, 현재 재고량, 비상사태, 배포, 임시 및 운송 중 재고 등)
 - 적절한 보관 조건을 유지하여 재고가 필요할 때 사용가능한 상태 유지
 -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재고 현황 및 보관 계획에 따라 잘 유지되는지 확인
- 창고와 UNHCR 사무소의 공동 책임은 크게 일일 업무, 월간 업무, 분기별 업무, 연간 업무가 있음
 - **(일일 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재고 관리 및 관리 시스템 갱신 프로젝트 (Management System Renewal Project, MSRP)를 업데이트 하는 것임
 - **(월간 업무)** 재고 카드와 MSRP를 보장하기 위해 재고 조정(Inventory Reconciliation)하는 것과, 유통기한이 만료되거나 손상된 재고를 처분하는 작업이 있음
 - **(분기별 업무)** 창고 관리자와 협력하여 재고 조사를 담당하는 UNHCR 담당자와 분기별로 전체 재고 확인을 수행해야 함. 만약에 물리적 재고와 MSRP 재고 기록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설명해야 함
 - **(연간 업무)** 재고에 대해 연간 물리적 검증은 UNHCR 담당자와 창고관리자가 수행해야함
- UNHCR 사무소의 창고 및 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주요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음

58) UNHCR(2013),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 for Warehouse & Inventory Management in UNHCR

59) UNHCR 창고는 파트너 업체 또는 UNHCR이 소유한 UNHCR에서 직접 재고가 저장되고 기록되는 곳을 말함

- ① 재고 Focal Point : UNHCR 사무소에서는 UNHCR 창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
 - 조달계획(Sourcing Plan) : 창고 관리자가 향후 필요한 공간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입하(Incoming Shipments) : 물품의 사양, 수량, PO/MSR(Material Stock Request)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함. 이는 창고 관리자가 물품 도착 전에 사전에 품목의 사양 확인, 적절한 검사 및 공간 마련 등의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됨
 - 유통 계획(Distribution Plan) : 창고 관리자가 재고 이동에 대한 예상 일정을 수립하여 인력과 공간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데 도움이 됨
 - 승인된 MSR(Approved MSR) : 창고 관리자(Warehouse Manager)가 명명된 조직/기업 또는 해당 대리인에게 재고를 공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유일한 문서임
 - ② 재고 입출하 과정(Process for Receiving and Releasing Inventory) : UNHCR 사무소는 창고에서 재고를 인도하거나 출고할 때 탁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개시하고 승인함
 - ③ 오류 수정 : Release Request를 검토하며, MSRs를 수정함
 - ④ 반품 : 만약에 물품의 결함 또는 손상, 중복 주문,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제품의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해 창고 또는 공급 업체에게 반송 관련 업무 진행
 - ⑤ MSRP 거래 기록 : UNHCR 사무소는 모든 재고 거래와 함께 MSRP 재고 모들을 매일 업데이트해야 함
 - ⑥ 문서관리 : UNHCR 사무소는 창고 거래 및 재고 보유와 관련된 하드카피 문서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함
 - ⑦ 보험 : 창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UNHCR 직원은 보관된 재고에 대한 적절한 보험을 마련해야 함. 가급적 SMLS가 제공하는 글로벌 보험을 통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현지 보험 회사를 통해 보험을 제공해야 함
- UNHCR 창고 관리 관련 주요 역할과 담당은 다음과 같음
- 창고 관리자(Manager)/감독자(Supervisor)/보관자(Storekeeper) : 창고 운영을 감독하고, 재고의 보관, 이동, 수령/재고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Controller/ Tally Clerk(s) : 실제 수량과 영수증/발행 문서에 나온 수량을

일치시켜야 하며, 재고 관련 기록 카드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야 함

- 기록관리인(Record-Keepers) : 재고 관련 문서 업데이트를 담당함
- 보안 : 창고 시설 및 보관된 물품을 24시간 보호해야 함
- 모든 창고 직원은 재고의 수령, 보관, 발송 및 재고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항상 인식해야 함

○ UNHCR 창고 관리 관련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레이아웃 및 보관 계획 : 창고 관리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보관되어 있는 재고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 레이아웃 및 보관 계획은 창고 내 공간 활용도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임. 모든 창고는 그리드 레이아웃(Grid Layout)을 기반으로 재고를 유지 및 관리하며, 서로 다른 항목이 저장되는 위치를 표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 보관 구역은 바닥에 표시해야 하며, 구역, 행 및 통로 식별 코드(예: Grid 영역(Area) 2/A열(Row A)/ 통로 1(Aisle 1)) 가 포함되어야 함. 최소 5개 영역을 지정해야 함: 1) 사무실 구역, 2) 물품 수령 구역, 3) 물품 보관 공간(외부 공간을 포함할 수 있음), 4) 파손/기한이 지난 물품 구역, 5) 물품 출고 준비를 위한 Loading 영역. 대규모의 창고의 경우 추가 영역이 필요할 수도 있음(귀중품 보관을 위한 밀폐, 잠금 구역, 예비 부품 보관 공간, 온도 제어/ 콜드체인 보관 구역, 위험 물품 관련)

- 레이아웃 및 보관 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잘 보장되어야 함

- (1) 식품 및 비식품 보관 영역 분리
- (2) 화물 운반대(Pallet)에 물품 보관(음식, 구호 물품 등)
- (3) Stack 주변과 Stack, 벽, 기둥, 빔 또는 기타 장애물 사이에 최소 1m의 공간을 두어 환기 및 이동할 수 있음
- (4) 동일한 품목의 다른 탁송물을 별도의 Stack에 보관(Store different consignments of the same item in separate stacks)
- (5) 비상사태와 같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입선출(FIFO, First In First Out) 원칙을 사용함
- (6) 재고의 위치 기록 카드에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 포함(보관지역 번호, 물품코드 또는 물품 설명, 물품의 ID/PO 번호)

② 재고 안전 및 보안

- 화물은 화재, 분실, 파손, 손상 및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보안 위험 평가 및 시설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 특히 부패하기 쉬운 물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부패하기 쉬운 소모품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과 모니터링 루틴이 마련되어야 함. 창고 관리는 만료일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UNHCR에 미리(최소 만료 60일 전) 통보해야 함 스택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간 사용을 극대화하고 재고 조사를 용이하게 하며 보관 중인 상품의 손상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세심한 적재가 필수적임

③ 적재(Stacking)

- 스택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간 사용을 극대화하고 재고 조사를 용이하게 하며 보관 중인 상품의 손상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세심한 적재가 필수적임
- 적재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④ 기타

- 창고 관리 관련 장비 및 공급품 관리, 탁송물 수취, 반품, 물품의 반출 (Release of Goods), 문서 관리 및 파일링(Filing), 구내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함

<표 4-4> 적재 주요 원칙 및 가이드라인

주요 원칙	가이드라인
안전성 (Stability)	-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은 창고 바닥에 직접 보관하지 말 것 - 위험 및 물품의 습기 노출을 피하기 위해 벽, 파이프, 지지대에 직접 물품을 보관하지 말 것
적재 순서 (Stacking Order)	- 다른 품목, 패키지 및 탁송물은 다른 Stack에 보관할 것 - 필요한 경우,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경우는 로테이션(Rotation)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모든 Stack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FIFO 원칙을 적용할 것
조명 및 환기 (Light and Ventilation)	- Stack의 크기는 최대 6mX6m로 제한하며, 과도한 바닥 하중과 Stack 내부 포장 및 내용물에 대한 압력 손상을 방지할 것 - Stack의 최대 높이는 물품의 종류와 포장에 따라 다르며, 창고 직원이 안전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보관을 보장할 것
파손품 (Damaged Goods)	- 파손된 물품을 별도로 놓고, 가능할 경우 수리하거나 재포장하여 사용 가능한 물품 먼저 우선 발급할 것 - 다양한 유형의 파손품은 함께 두지 말 것
개방 구역 (Open Areas)	-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과 다른 공급품은 분리할 것 - 연료, 윤활유 및 기타 유해물질을 별도의 건물이나 보호 구역에서 보관할 것
로테이션 (Rotation)	- 주기적으로 물품의 위치를 변경 할 것
병&캔 (Bottles&Cans)	- 캔이나 병이 들어있는 패키지는 똑바로 세워서 놓을 것

자료: UNHCR(2013),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 for Warehouse & Inventory Management in UNHCR, p.23.

4) UNHCR의 비축물자관리체계 관련 시사점

- UNHCR은 핵심구호물품(Core Relief Items)으로 주거품목(shelter items)과 가사물품(domestic items)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음(부록 2 참고)
 - 핵심구호물품 카탈로그에는 동 구호물품의 용량, 무게, 성분, 작동 온도, 평균 두께, 충격저항/강하 테스트 등 기술사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 또한 핵심구호물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UNHCR 기술 수준(technical requirements)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UNHCR은 창고의 공간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UNHCR은 창고 및 재고 관리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보유하고 있어, 창고 및 재고 관리의 목표 및 책임, 창고 관리 관련 주요 업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는 창고관리와 관련된 일일 업무, 월간 업무, 분기별 업무, 연간 업무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표준운영절차에 따르면, 비상사태와 같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축물자는 선입선출(FIFO, First In First Out) 원칙을 활용하여 지원됨
- 우리나라도 UNHCR과 같이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와 관련된 표준운영절차 또는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제5장 체계·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긴급현물지원 매뉴얼

제1절 우리나라의 긴급현물지원체계 개선
방안 및 정책제언

제2절 우리나라의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
방안 및 정책제언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
지원 매뉴얼

제5장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체계 ·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긴급현물지원 매뉴얼

제1절 우리나라의 긴급현물지원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긴급현물지원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서술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5-1> 긴급현물지원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개선방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개선방안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의 수의계약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 시 수의계약의 근거를 명확히 확립함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에 관여된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거버넌스 구조의 복잡성 있음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에 관여된 이해관계자(재외공관, 본부, KOICA)가 진행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 포털을 구축함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조달에 필요한 사전정보가 미비하여 대응이 어려움	→ 국가별 전문가 풀(pool) 작성 및 의료제품 조달에 시 필요한 정보 취득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 및 DB 축적

1.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첫째, 법률상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의 수의계약 근거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우선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의 근거로 「해외긴급구호법」이 존
재하나,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해외긴급
구호법」에는 존재하지 않음

- 신속한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국내조달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국내”가 아닌 “해외”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활용할 수 있는지 법문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표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1호)

구분	내용
제1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 시 수의계약의 근거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⁶⁰⁾
- 제1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개정하여 해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가목을 인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임
 - 예를 들어, 현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중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불분명하게 작성된 가목을 “국내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명확히 하여 해외긴급구호 시에도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임
- 제2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마목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 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60) 긴급현물지원체계 사례조사에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의 경우 시사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를 사전에 마련 및 검토하여 긴급 현물지원 필요 시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있도록 명시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마. 해외긴급구호를 목적으로 현물지원을 위해 구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라고 추가하는 것임
-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가 법령안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및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야 함
-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음⁶¹⁾

2. 해외긴급구호 유관기관 간 의사소통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 둘째,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음
 - 재외공관, 본부(외교부), KOICA 측이 서로 공문을 통하여 지원국가, 기본적인 품목확정, 수하인 정보 확인, 운송조건 및 운송일정 등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
 - 본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수원국 정부 측과 논의하여 수하인 정보 및 운송조건, 운송일정 등을 논의하고 재외공관이 이를 본부에 전달하면 본부는 해당 내용을 KOICA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에 관여된 이해관계자인 재외공관, 본부, KOICA가 전체 진행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 포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KOICA 전자조달시스템(nebid.koica.go.kr)에서 전자조달을 시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체계 전자포털을 KOICA 서버에 신설하여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로 함
 - 본 비공개 전자 포털에는 재외공관, 본부, KOICA만 대표 아이디를 생성해서

61)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URL: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접속일자: 2021.08.25.).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공문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정보들을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재외공관, 본부, KOICA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재외공관이 수원국 정부 측으로부터 구호 지원 요청을 받고, 본부에 현물지원 건의를 접수하는 지원절차의 시작을 본 전자 포털을 통해서 재외공관이 직접 접수하도록함
- 외교부 내부 검토를 통한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절차가 개시되면 별도의 공문 없이 KOICA도 이를 전자 포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국가와 지원규모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품목, 수하인 정보, 운송조건 및 운송일정 등도 수원국 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재외공관에서 본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본부와 KOICA가 해외긴급구호 현물지원을 위한 조달 및 운송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자 포털에서 바로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제품 사전 정보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마련

- 셋째,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을 현물지원하기 위한 조달 시 필수적인 정보를 얻는데 시간적인 지연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음
 - 의료기기 조달 시 수원국 현지의 전압 등의 수원국 내의 사용환경, 제품의 규격, 의료기기 인증 등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공개입찰에 필요한 상세 사양이 준비되어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공개입찰에 필요한 상세 사양을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데 수일 내지는 수주가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별 의료 전문가 풀(pool) 작성 및 의료제품 조달에 시 필요한 정보 취득에 대한 상시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누적화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우선 의료제품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공개입찰에 필요한 상세 사양을 의뢰할 의료 전문가 풀(pool)을 확립하여 놓는 것이 중요함
 - 의료 전문가 풀(pool) 확립을 위해서는 KOICA가 MOU를 맺고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⁶²⁾⁶³⁾과 연계하여 국가별 의료 전문가를 추천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상황(case by case)에 따라 의료정보를 얻는 프로세스를 다르게 하는 것보다, 일관된 상시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일관된 상시적 프로세스 수립을 위해서는 지난 2020년 해외 국가별 의료제품 지원 시 의료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은 내용을 정리하고 정보를 누적화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서 차후 지원 시 참고하여 보다 신속한 사전 정보 확인이 가능함

62) KOICA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015년 10월 2일 보건 분야 무상원조사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관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함. 이번 MOU의 체결은 2014년부터 외교부-복지부-KOICA-KOFIH 4자간 진행된 협의체의 결실로 이루어졌으며, KOICA와 KOFIH 양기관은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규정하였음. (출처: 대한뉴스, 2015.10.02. URL: <http://www.daehannews.kr/mobile/article.html?no=433059>)

63) 긴급현물지원체계 사례조사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경우, 위기지원센터(CDCS)와 보건부의 감독을 받는 공중보건청이 2020년 협약을 맺어 두 기관이 협업하여 해외에 보건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협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KOICA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기 체결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의료기기 지원 시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제2절 우리나라의 비축물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비축물자관리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서술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5-2> 비축물자관리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개선방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개선방안
비축물자관리체계의 미흡	비축물자관리의 중장기 로드맵, 실행계획, 실적평가, 피드백 기능의 체계화
비축물자의 유효기간과 반출의 적정시기 관리의 문제	유효기간이 있는 비축물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외공관에 수요조사 실시
의료 물자의 비축 품목 미포함	방역물품 위주로 의료물자 비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비축물자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

1. 비축물자관리의 중장기 로드맵, 실행계획, 실적평가, 피드백 기능의 체계화

- 첫째,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비축물자관리에 관한 체계적이 문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2020.01)’에 비축물자의 구체적 품목으로 텐트, 방수포, 담요, 식수정화제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비축물자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서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발행하고 있으나, 해외긴급구호 비축물자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라 개선방안만 다루고 있어서, 비축물자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축물자관리의 중장기 로드맵, 실행계획, 실적평가, 피드백 기능의 체계화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국내 재해발생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해구호법 시행규

척」 별표 1에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부록 3 참조)

- 국내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규격 등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수준까지 「해외긴급구호법」에 이를 명시한다면,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비축물자의 유형을 다변화해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경직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축물자관리체계를 규정화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 국내 재해구호물자가 시행규칙에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를 명시해놓은 수준까지는 문건화하지 않더라도, 외교부에서는 비축물자관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외긴급구호 물품 비축물자관리의 중장기 로드맵’을 먼저 구성하여 문건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실행기관인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서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물자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문건으로 작성하여 관리함
- KOICA는 이렇게 작성된 실행계획에 대해 자기 실적평가를 매년 실시함
- 이러한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KOICA에서 ‘해외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의 방식보다 비축물자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사료됨

2. 유효기간이 있는 물자의 수요에 대해 재외공관에 정기적 수요조사 시행

- 둘째,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비축물자관리의 유효기간과 반출의 적정 시기 관리 필요
 - 현재 비축하고 있는 물자 중 식수정화제는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유효기간 내에 현물지원을 해야 함
 - 만약 비축물자가 유효기간 내에 현물지원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폐기처리되므로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되지 않도록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있는 비축물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외공관에 수요조사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유효기간이 도래된 물자 또는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물자는 국내 구호기

관에 기증하는 것이 여의치 않음⁶⁴⁾

-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유효기간이 도래되지 않도록 비축물자의 관리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비축물자 중 유효기간이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마감되기 최소 6개월 전에 KOICA에서 점검을 하여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불용 또는 처리를 할지 결정을 함
- 불용으로 판단이 되면 폐기를 하되, 처리를 하기로 판단이 되면 이를 현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현재 유효기간이 있는 비축물자로는 식수정화제가 있음
- 외교부에서는 식수정화제를 필요로 하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재외공관에서 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현물지원을 하도록 함

3. 방역물품 위주로 의료물자 비축을 시범적으로 실시

-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 물자를 비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음
 - 해열제, 항생제와 같은 기본적인 의약품, 그리고 산소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기, 마스크, 방역복과 같은 방역물품을 비축물자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물품을 현물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의료 관련 물자를 사전에 비축했을 때 이를 원하는 수원국이 많지 않은 경우⁶⁵⁾ 기비축한 물자를 유통기한 내에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음⁶⁶⁾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방역물품 위주로 의료물자 비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비축물자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

64) 비축물자관리체계의 사례조사에서 살펴보았던 호주의 사례에서도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도래한 물자를 기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도래된 물자를 폐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65) 긴급현물지원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을 지원할 수는 없음.

66) 일본 JICA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긴급현물지원을 수행한 사례를 검토하면(부록 5 참조), 비축물자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지 조달을 하거나 일본 내에서 조달하여 운송한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의료기기 또는 방역물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며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도래로 인한 폐기의 위험이 높으므로 비축을 추천하지 않음
- 의료기기는 국가별로 규격 및 사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방역물품에 비하여 비축물자로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음
- 지금까지 의료 관련 물품을 비축하지 않았던 사유는 유통기한 및 국가별 규격의 상이 등의 문제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의 방역물품을 시범적으로 비축해보는 것을 추천할 수 있음
- 방역물품의 유형으로는 안면 가리개(face shield), 상온 보관 가능 진단키트, 방호복(보호우의), 덧신, 장갑, 텐탈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등이 있음
- 방역물품 종류 및 종류별 비축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2020년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긴급현물지원을 한 내역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를 참고로 하여 품목 및 수량을 시범적으로 소량 비축하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외교부 및 KOICA의 실무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및 KOICA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비축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방역물품 구성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렇게 비축물자를 방역물자로 다변화하는 경우, ‘비축물자관리팀’을 신설하여, 외교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KOICA 실무자 2명과 함께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신설팀을 구축하여 시범적인 방역물품 비축 업무에 투입할 필요가 있음⁶⁷⁾

67) 현재는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서 비축물자 담당자가 한 명 있으며, 이 담당자는 비축물자 관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KDRT 구조팀 지원, 예산, 현물지원 업무도 병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방역물품을 비축물자로 구성하여 다변화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KOICA의 비축물자 담당인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매뉴얼

1. 매뉴얼의 개요

1) 매뉴얼의 목적 및 대상

- 본 매뉴얼은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의 긴급현물지원 담당자가 긴급현물지원 시 국내에서 현물을 조달함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참조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임
 - 따라서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의 담당자가 폭넓은 관점에서 긴급현물지원 시 국내 물품 조달 체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음

2) 매뉴얼의 구성

- 본 매뉴얼에 포함되는 긴급현물지원 시 조달 체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 단계는 수원국 정부의 지원요청부터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서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 조달요청을 하기까지의 단계로,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임
 - 두 번째 단계는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과 KOICA 조달계약팀이 긴급현물지원을 하기 위한 물품의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단계로, KOICA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임
 - 세 번째 단계는 납품⇒검사 및 검수⇒운송(물류)⇒기증식⇒지원 결과 보고 등의 단계로, 조달 이후에 수원국에 도착하여 수원기관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물품 및 물류 계약업체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임

3) 매뉴얼의 제한점

- 본 매뉴얼은 연구자가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인도적 현물지원 시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본 매뉴얼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 아니라 업무 진행 시 참고사항 및 참조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매뉴얼(조달 체계)

1) 1단계 :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국내조달을 요청하기까지의 단계

(1) 수원국 정부의 긴급현물지원 요청

-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위치한 수원국 정부에서, 수원국 주재 재외공관에 긴급현물지원을 요청함

(2) 수원국 주재 재외공관의 긴급현물지원 건의

- 수원국 주재 재외공관은 우리나라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 수원국에 대한 긴급현물지원을 건의함

(3)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국내조달 결정 전 체크리스트 검토

- ‘양자 현물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물품 등을 국내조달할지 여부를 결정
 -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특히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동 물품이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경우에는 현물지원보다는 현금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두 번째는 “운송비용은 재원의 가치 있는 사용 원칙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서, 물품 구매비용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서 운송비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현물지원이 아닌 현금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국내조달 결정 전 체크리스트	체크
① 현지 기후, 문화 및 종교에 적합한 물품인가?	☐
② 피해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인가?	☐
③ 동 물품은 현지에서 구매가능한가?	☐
④ 운송비용은 재원의 가치 있는 사용 원칙에 부합하는가?	☐
⑤ 동 물품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동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가?	☐
⑥ 동 물품의 유입으로 항만과 물류채널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

(4) 국내조달하여 긴급현물지원을 하기로 결정

-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서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현금 지원이 아닌 국내에서 조달하여 긴급현물지원을 하기로 결정함

(5) 긴급현물지원 조달 관련 정보 확정

-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서 현물지원 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조달 전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수원국 또는 수원국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
 - 지원 국가와 정확한 지원 품목 그리고 지원 품목의 개수 등의 규모가 정확히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원활한 조달을 위한 기본 정보를 수집함
 - 운송과 관련하여 수원국 현지의 수신처가 어디인지, 정확한 주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신인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정하여 국내조달 시 운송에 대한 요건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운송방법(인코텀즈2020) 및 수원국이 물품을 받고자 하는 운송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내조달 시 운송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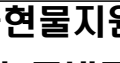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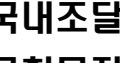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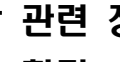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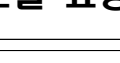
긴급현물지원 조달 관련 정보 확정		체크
① 지원국가 및 지원품목·지원규모가 확정되었는가?		☐
② 수원국 현지의 수신처의 정확한 주소 및 수신인이 확정되었는가?		☐
③ 운송방법(인코텀즈2020) 및 운송일정이 확정되었는가?		☐

(6) KOICA에 조달 요청

-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서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 긴급현물지원 조달 요청

<표 5-2> 1단계: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국내조달 요청하기까지의 단계

주체	구분	내용
수원국 정부	지원요청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위치한 수원국 정부에서 수원국 주재 해외 공관에 긴급현물 지원을 요청함

수원국 주재 해외 공관	 긴급현물지원 건의	수원국 주재 재외공관은 우리나라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 수원국에 대한 긴급현물지원을 건의함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국내조달 결정 전 체크리스트 검토	‘양자 현물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물품 등을 국내조달할지 결정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국내조달 긴급현물지원 결정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현금지원이 아닌 국내에서 조달하여 긴급현물지원을하기로 결정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긴급현물지원 조달 관련 정보 확정	현물지원 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조달 전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수원국 또는 수원국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KOICA에 조달 요청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 긴급현물지원 조달 요청

2) 2단계 : 물품의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단계

(1) 계약방법의 결정

○ 우선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함

- 우리나라 정부계약에 있어서 경쟁계약이 기본이며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긴급현물지원을 위해 물품 조달 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경우로 나누어서 계약체결까지의 단계를 살펴보고자 함

- 먼저 경쟁계약을 하기로 한 경우부터 알아보기로 함

(2) 경쟁계약의 경우

① 사전규격 공개

-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명 사전규격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음
 - 계약예규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음
 - 계약예규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경쟁입찰에서 사전규격 공개는 필수적인 것이나, 해당연도에 1회 규격을 사전에 공개했다면 사전규격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5일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긴급의 경우에는 3일만 공개할 수 있음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4.>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주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 1.]

- 물품에 따라 전문가에게 사전규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예: 의료제품의 경우 수원국의 의료제품 규격 등에 대한 전문가

의뢰)

- 전문가에 문의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관련 전문가 물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여 전문가 섭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임
- 두 번째는 전문가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에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임
- 세 번째는 그간 사전규격 공개를 위해 전문가에 조사를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매뉴얼로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게 되더라도, 사전규격 검토에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② 입찰공고

- 사전규격 공개가 끝난 후에는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동조 제4항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 기간을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음
 - 이 중 제3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경쟁입찰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

-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③ 입찰진행

- 입찰공고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입찰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업체에서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KOICA 조달계약팀에서 입찰서를 접수 받음

④ 낙찰자 결정

- 접수된 입찰서를 개찰하여 필요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를 통보함

⑤ 검토·협상

- 필요시 기술협상을 요청하고 가격 협상 및 기타 계약조건을 검토함

⑥ 계약체결

-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를 업체에 발송하고 업체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최종계약서에 KOICA가 서명을 함

(3) 수의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은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은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현물지원을 위한 국내조달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KOICA 조달계약팀에 조달을 의뢰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26조 제1항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들을 다섯 가지 각호로 구성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4개목을 제시하고 있음
 -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내용으로 가목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중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임

<표 5-3>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1호)

구분	내용
제1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11개목을 제시하고 있음
 - 만약 수원국에서 특정한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기 중 수원국의 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나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1인 뿐인 경우라면,
 - 이 중 해외긴급구호 긴급현물지원 시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것은 자목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5-4>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2호)

구분	내용
제2호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출처: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② 수의계약 의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은 KOICA 조달계약팀에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계획을 내부결재 받음
 - 수의계약과 관련된 과업범위, 집행한도액, 과업수행기능업체, (복수)업체 견적서 등이 내부결재문에 포함됨
- 사업담당부서인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서는 KOICA 조달계약팀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뢰 공문을 송부

③ 수의시담 등록 및 업체에 통보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뢰일자, 집행한도액, 입찰구분, 입찰종류, 의뢰명, 시담선정업체, 의뢰자, 납품기한, 시담일시, 시담공지내용을 작성
- 시담선정업체에 투찰내역서, 수행계획서 등 필수제출자료 및 시담일시 등을 적시하여 문서로 수의시담을 통보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예정가격 산정

-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나 유사 사업의 낙찰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⑤ 수의시담 진행

- 수의시담 대상 업체가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을 제안한 경우 시담 완료
- 수의시담 대상 업체가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제안하지 않아 수의시담이 결렬된 경우, 수의시담 대상 업체가 제시한 계약금액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근거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예정가격 변경 검토가 가능함

⑥ 계약체결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기등록 후 저장하면 계약이 체결됨

<표 5-5> 2단계: 물품의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단계

주체	경쟁계약	수의계약
KOICA 다자협력 인도지원 실 및 KOICA 조달계약 팀	계약의 방법 결정	계약의 방법 결정
	↓	↓
	사전규격 공개 (5일, 긴급시 3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
	입찰공고 (7일, 긴급시 5일)	수의계약 의뢰
	↓	↓
	입찰진행	수의시담 등록 및 업체에 통보
	↓	↓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에 예정가격 산정
	↓	↓
	검토·협상	수의시담 진행
	↓	↓
	계약 체결	계약 체결

3) 3단계 : 조달 이후 수원국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1) 납품

- 계약서 상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규격서(시방서) 상의 규격으로 계약 업체가 현물지원 물품 납품

(2) 검사 및 검수

- KOICA 및 KOICA의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검사업체)이 계약업체가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관련 법령·구매규격·시방서 등 계약서 내용과 부합하는지 검사를 수행함
- 또한 물건의 개수를 헤아리는 검수도 함께 수행함

(3) 운송(물류)

-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물류 조건에 따라 해상운송 등을 실시
- 물류조건(INCOTERMS 2020)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의 약칭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하였으며 KOICA는 주로 아래 4가지 거래 조건을 활용함

구 분	인도장소	내 용
EXW (공장 인도조건)	납품업체	KOICA에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납품업체의 소재지에서 기차재를 인수. 국내운송을 포함한 운송비용, 통관 등 모든 비용 KOICA 부담
FCA (운송인 인도조건)	KOICA 지정장소	KOICA 구매 계약 시 가장 많이 쓰는 조건. 납품업체가 운송인(물류업체)에게 기차재를 인도하며, 국내운송을 제외한 운송비용 통관 등을 KOICA가 부담
CIF (운임 및 보험료 지급조건)	목적항(현지)	납품업체가 수원국 항구까지 물류 및 보험 비용을 부담하며, FCA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조건
DAP (목적지 인도조건)	목적항(현지) 지정장소	납품업체가 통관 및 현지 운송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

(4) 기증식

- 수원국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원국 주재 재외공관 또는 KOICA 해외사무소가 기증식을 수행함

(5) 지원결과 보고

- 현물지원 물품 전달 절차가 마무리되면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서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 지원결과를 보고함

<표 5-6> 3단계: 조달 이후 수원국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주체	구분	내용
물품 및 물류 계약 업체	납품	계약서 상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규격서(시방서) 상의 규격으로 계약 업체가 현물지원 물품 납품
KOICA · 검사전담업체	검사 및 검수	KOICA 및 KOICA의 위임을 받은 검사 전담업체가 계약업체가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서 내용과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물건의 개수를 헤아리는 검수를 수행함
물류 업체 또는 물품 계약 업체	운송(물류)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물류 조건에 따라 해상운송 등을 실시
재외공관 또는 KOICA 해외사무소	기증식	수원국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원국 주재 재외공관 또는 KOICA 해외사무소가 기증식을 수행함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	지원결과 보고	현물지원 물품 전달 절차가 마무리되면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서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 지원결과를 보고함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덕수 (2019). 프랑스의 아프리카 농업 ODA정책과 시사점. 프랑스문화연구, 43(1): 223-251.
- 외교부 (2019.7.)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안).
- 외교부 (2018.1.) 제4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 외교부 (2020.1.) 제5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 외교통상부 · 한국국제협력단 (2008.3.) 해외긴급구호대책.
- 외교통상부 · 한국국제협력단 (2013.10.) 해외긴급구호대책.
- 외교통상부 · 한국국제협력단 (2015.9.)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 한국국제협력단 (2016). 해외긴급구호의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관련 주요 공여국 사례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7). 주요국의 ODA 법제.

<해외문헌>

-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ode de la commande publique) [2021. 4. 1, 일부개정]
- 프랑스 국제연대 및 개발정책의 방향 및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LOI n° 2014-773 du 7 juillet 2014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politique de développement et de solidarité internationale) [2018. 8. 6, 일부개정]
- DFAT (2018). DFAT' S HUMANITARIAN LOGISTICS CAPABILITY.
- DFAT (2016). The Humanitarian Supplies Challenge_Information Handbook for Applicants.

GHD (2018). 24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

UNHCR (2012). Core Relief Items Catalogue.

UNHCR (2015). Headquarters.

UNHCR. Operational Support and Management.

UNHCR. Quality management for Core Relief Item(UNHCR).

UNHCR (2013).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 for Warehouse & Inventory Management in UNHCR.

UNHCR. Warehouse Space Standards.

<참고 사이트>

프랑스 개발청. La France lance, via l' AFD, l' initiative « Covid-19 - Santé en commun » pour soutenir les pays d' Afrique <https://www.afd.fr/fr/actualites/france-lance-initiative-covid-19-sante-en-commun-pour-soutenir-pays-afrique> (검색일: 2021.06.15.)

프랑스 유럽외교부. Synthèse - Évaluation du Fonds d' urgence humanitaire (14 janvier 2021) <https://www.diplomatie.gouv.fr/fr/politique-etrangere-de-la-france/action-humanitaire-d-urgence/actualites-et-evenements/article/synthese-evaluation-du-fonds-d-urgence-humanitaire-14-01-21> (검색일: 2021.06.15.)

DFAT. DFAT HUMANITARIAN LOGISTICS CAPABILITY.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design-document-humanitarian-logistics-capability.pdf>

DFAT. The Humanitarian Supplies Challenge_Information Handbook for Applicants.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humanitarian-supplies-challenge-application-support-handbook.pdf>

JICA. 국제 긴급 원조 물자 공여. <https://www.jica.go.jp/jdr/about/supply.html>

JICA. 긴급 지원 보도자료. <https://www.jica.go.jp/information/jdrt/index.html>

- JICA. 조달 관련 규정. <https://www.jica.go.jp/announce/manual/guideline/common/index.html>
- Good Humanitarian Donorship, (GHD). <https://www.ghdinitiative.org/ghd/gns/principles-good-practice-of-ghd/principles-good-practice-ghd.html>
- Palladium. <https://thepalladiumgroup.com/news/How-Does-the-Australian-Government-Procure-Emergency-Relief-Supplies->
- UNGM. <https://www.ungm.org/Shared/KnowledgeCenter/Pages/UNHCR> (검색일: 2021.06.10.)
- UNHCR Emergency Handbook. <https://emergency.unhcr.org/>
- UNHCR. <https://www.unhcr.org/>
- UNHCR. <https://emergency.unhcr.org/entry/45961/warehouse-space-standards> (검색일: 2021.06.09.)
- UNHCR. <https://www.unhcr.org/admin/execoffice/4bffd1c89/division-emergency-security-supply-dess.html> (검색일: 2021.06.10.)

부록 1. 양자 현물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⁶⁸⁾

68) 출처: 외교부(2020.01). 제5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 2012년 OECD DAC 동료검토 결과, 현물 형태의 양자 인도적 지원 시 동 지원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도입 권고에 따라, 양자 현물 지원의 효과성과 적절성 검토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 **(기본방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물지원으로 우리 해외긴급구호의 효과성,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 **(전제조건)** △피해국 내에 우리 상주 공관(또는 KOICA 사무소)이 있고, △피해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피해국 주재 공관의 현물지원 건의가 있으며, △피해국 주재 공관(또는 KOICA 사무소)에서 현물지원을 수행할 수 있고 지원된 물품이 지원대상에게 적절히 지원되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물지원 여부 등 검토 개시

□ **(검토사항)** 아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물품 및 방법 최종 결정

* 「OECD DAC 동료검토에 기반한 인도적 지원 개선을 위한 12가지 교훈」 참고

- ① 현지 기후, 문화 및 종교에 적합한 물품인가?
- ② 피해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인가?
- ③ 동 물품은 현지에서 구매가능한가?
- ④ 운송비용은 재원의 가치 있는 사용 원칙에 부합하는가?
- ⑤ 동 물품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동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가?
- ⑥ 동 물품 유입으로 항만과 물류채널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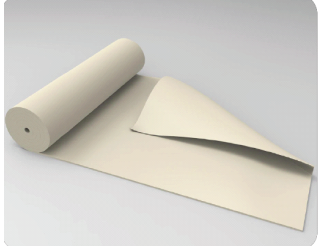
※ 상기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현물 지원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나 현지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비용 대비 효과성을 감안하여 국내비축물품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지원절차)** ① 피해국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른 피해국 주재 공관으로부터의 현물지원 건의(필요물품 목록 포함) 접수 → ② 상기 체크리스트 검토 → ③ (상기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현물지원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국 주재 공관(또는 KOICA 사무소)의 구체 지원계획(현물 조달 및 전달 방식 등) 확인 → ④ 공관(또는 KOICA 사무소)에 현물 구매대금 송금(필요시 국내비축물품 제공 또는 국내에서 조달하여 운송) → ⑤ 모니터링 결과(정산 내역 포함) 보고 접수

부록 2. UNHCR 핵심구호물품(Core Relief Item)

목 록

품목명		품목번호
폴리에스터 모기장		00007942
폴리에틸렌 모기장		00007943
플라스틱 양동이 14L		00007071
플라스틱 방수포 롤 4x50m		00007186
플라스틱 방수포 시트 4x5m		00007197
휴대용 태양등		00007350

품목명		품목번호
캔버스 롤		00007072
가방(Carrying Bag)	—	00006641
가족용 텐트		00005353
고온 보온담요		00005786
주방세트 Type B (알루미늄)		00007935
주방세트 Type B (스테인리스 스틸)		00006933
중온 보온담요		00005787

품 목 명		품 목 번 호
위생천		00006137
접이식 물통(Jerry Can)		00000096
차광망		00007223
수면용 매트		00002020
월동 키트		00006648

자료: UNHCR Field Feedback Form for Core Relief Items,
Core Relief Items Catalogue 및 Google Images

부록 3. 국내 긴급구호물자 관리 체계

1. 국내 긴급구호물자 관리 체계

- (개요) 국내 긴급구호물자 관리 체계의 경우, 재해구호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물품 또는 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 및 상시 비축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음
- 또한, 각 지자체는 재해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구호세트의 제작, 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 등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긴급구호물자의 확보 및 비축

- 재해구호법 제 6조에 따라 각 시·도 등 지자체는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함
- 또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해구호물자를 관리를 위한 창고를 운영 하되, 창고가 부족할 경우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세트화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각 지자체는 풍수해 및 산사태 위험 등급별 위험도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인구밀도·이재민 발생률 및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비축물자 확보 기준을 산정하여 구호물자를 비축함
- ※ 산정방법(시·군·구 위험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재민 수 추정):

$$\text{추정 이재민수} = \text{위험면적(km}^2\text{)} \times \text{인구밀도(명/km}^2\text{)} \times \text{이재민발생률(\%)} \times \text{발생빈도}$$
- 지자체가 확보해야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에는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세트, 비상식량 등이 있음(표 1 참조)
- 응급구호세트 최소 비축기준보다 추정 이재민수가 적은 지자체는 응급구호세트 최소 비축기준을 85개로 적용함
- 취사구호세트 최소 비축기준은 최근 5년간 사용 실적을 고려하여 응급구호세트 최소 비축기준의 30%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 1> 지자체 확보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규격

1. 응급구호세트(남자/여자): 1명 기준

구 분	담요	침술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규 격	200cm×150cm, 1.3kg 200cm×150cm, 0.7kg	일반용	100g	80cm×40cm	미용티슈
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구 분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생리대	숙내의	양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규 격	반코팅	면폴리 혼방	1회용 /일반중형	면	면	우레탄, 방수 70cm×200cm	대, 중, 소
수 량	1켢레	1벌	1개/1조	2벌	2켢레	1개	1족

구 분	베개	안대	귀마개	치약	물티슈	생수
규 격	PVC 38cm×28cm×10cm	-	-	130g	60매	1리터
수 량	1개	1개	1개	-	-	-

2. 취사구호세트: 1세대 4명 기준

구 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규 격	휴대용	4인용	스테인리스 스틸	230g	1kg	500g	고급형
수 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켢레

구 분	수세미	다용도가방	쌀	부식류	부탄가스	살균·표백제
규 격	부직포	PE타포린	10kg	고추장, 간장, 된장 및 김치 등	-	-
수 량	2개	1개	1개	-	4개	1개

3. 개별구호세트: 1명 기준

모포 2매

4. 비상식량

그 밖의 부식 및 즉석식품

5.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 응급의약품(소독약, 상처치료 연고, 밴드, 붕대, 반창고, 거즈, 핀셋, 스프레이파스 등)
- 분유세트(분유 및 젖병)
- 기저귀
- 모기약
- 위생 및 청결을 위한 용품(삼푸, 린스, 바디클렌저 등) 등

※ 물품의 규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위
규격과 다른 규격의 물품으로 확보할 수 있음

출처: 행정안전부(2019.12.19.),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내용 재구성

- 특히, 생수, 부식류, 부탄가스 등 유통기한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으로
인하여 장기보관이 어려운 개별구호물품은 기 지정된 사전 구매선에서
조달하되, 필요시* 재난현장과 가까운 곳을 긴급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사전 구매선에서 조달시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현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또한,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의 구호에 사용하였거나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다시 비축하여 지자체별 적정 비축수준을 항상 유지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구호법 제 6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비축현황, 입·출고 내역 등을 주기적(분기별 1회)으로 점검함
- 재해 발생시, 각 지자체는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해야 함

□ 긴급구호물자의 관리

○ 재해구호물자 보관기준

- 응급구호세트의 경우 3년 동안 보관 후 3년 경과 시 2년간 일반물자*로 전환하여 관리함

* 일반물자는 대규모 재난시 사용하거나, 취약계층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

- 취사구호세트의 경우 7년간 보관하며, 화학제품 4종은 3.5년마다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함)
- 구호물자의 처분 시점은 제품 생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구호세트 제작시 품목간 생산일자를 1개월 이내로 조정하여 납품을 유도함
- 유통기간이 도래한 물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며, 초과한 제품의 경우 폐기 처분함

※ 유통기간 만료시기 도래 전, 미리 비축기준 대비 부족량을 확보한 후 처분하며, 이를 위해 보관물품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함

- 재해구호물자의 보관관리, 구호지원기관 위탁 또는 교체 시 소요되는 운반비 등의 소요경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이 가능함

○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

- 보관창고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적으며,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선정함. 창고의 규모는 비축기준 이상의 구호

물자를 비축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선정함

- 보관 시 구호물품의 손상 방지와 적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선반 등을 제작하여 보관하며, 창고내 청결 등을 고려하여 바닥 장판 등을 설치함

○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

- 보관창고에는 재해구호물자, 의약품, 전시 구호물자만을 보관하며, 이 때, 세 가지 구호물자의 보관 공간을 서로 구분해야 함
- 각 지자체는 창고별 구호물자 및 창고 관리를 위해 정·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며, 보관창고의 출입구에 해당 인원 및 창고 명패를 부착해야 함

※ 관리책임자는 구호물자 담당부서에서 지정하여 구호물품의 반·출입 및 창고 운영을 관리함

- 관리책임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물자의 망실, 훼손 및 보관상태 등을 점검해야 함

※ 창고 내 구호물자 현황판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

○ 전국재해구호협회

- 재해구호법 제 29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동법 제 33조에 따라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공급,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각 지자체가 제작 및 보유해야 하는 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를 위탁받아 제작하여 파주와 함양에 위치한 재해구호물류센터에 비축하고 있음(표 2 참조)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장기 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표 2>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물품 보관현황(2021.02.28. 기준)

구 분	품 목	수량(단위: 세트)
파주 재해구호물류센터	응급구호세트(남)	4,087
	응급구호세트(여)	3,940
	취사구호세트	2,769
	소 계	10,796
함양 재해구호물류센터	응급구호세트(남)	5,664
	응급구호세트(여)	6,070
	취사구호세트	4,193
	소 계	15,927

출처: 전국재해구호협회 웹사이트 내용 재구성(<https://relief.or.kr/hope/paju.php>) (검색일: 2021.06.28.)

- 재난이나 재해 발생시, ① 지자체를 통해 지원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고, ② 지원 일시, 장소 및 수령 담당자를 확인한 후, ③ 지원 물품 전달, ④ 인수 확인의 과정을 거쳐 구호물자를 지원함

부록 4. 일본 긴급원조물자 공여 실적

긴급원조물자 공여 실적(연도별 2020.12.18 현재)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 긴급·인도지원과

연도	파견지	재난 유형	긴급원조물자 공여(건수)
1987	베네수엘라	홍수	3
	바누아투	사이클론	
1988	에티오피아	가뭄	12
	수단	홍수	
	자메이카	허리케인	
	소련(아르메니아)	지진	
1989	중국	홍수	7
	코트디부아르	난민	
1990	이란	지진	14
	필리핀	지진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유출 사고	
1991	이란	난민	19
	터키	난민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유출 사고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필리핀	태풍	
1992	니카라과	지진	18
	이집트	지진	
	인도네시아	지진	
1993	네팔	홍수	18
	말레이시아	빌딩 붕괴 사고	
1994	인도네시아	화산분화	14
1995	인도네시아	지진	16
1996	방글라데시	토네이도	24
	이집트	빌딩 붕괴 사고	
1997	말레이시아	대기오염	18
	인도네시아	삼림화재	
	싱가포르	기름 유출 사고	
1998	파푸아뉴기니	쓰나미	29
	방글라데시	홍수	
	도미니카 공화국	허리케인	
	온두라스	허리케인	
	니카라과	허리케인	
	콜롬비아	지진	
1999	터키	지진	22
	대만	지진	
	터키	지진	
	모잠비크	홍수	

2000	인도네시아	지진	11
	엘살바도르	지진	
	인도	지진	
2001			9
2002	파푸아뉴기니	화산분화	22
	베트남	사스	
2003	중국	사스	15
	알제리	지진	
	이란	지진	
	모로코	지진	
2004	인도네시아	쓰나미	29
	태국	쓰나미	
	스리랑카	쓰나미	
	몰디브	쓰나미	
	인도네시아	지진	
2005	인도네시아	지진	19
	러시아(캄차카)	잠수정 사고	
	파키스탄	지진	
2006	인도네시아	지진	15
	필리핀	기름 유출 사고	
2007	한국	기름 유출 사고	22
2008	중국	지진	23
	미얀마	사이클론	
2009	대만	태풍	14
	인도네시아	지진	
	아이티	지진	
	칠레	지진	
2010	파키스탄	홍수	15
	인도네시아	화산분화	
	뉴질랜드	지진	
2011	러시아(하바롭스크)	공장화재	19
	태국	홍수	
2012			17
2013	필리핀	태풍	16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	
2014	가나	에볼라출혈열	23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에볼라출혈열	
	몰디브	화재	
	인도네시아	항공기 사고	
	바누아투	사이클론	
2015	네팔	지진	10
	인도네시아	대기오염(haze)	
2016	콩고 민주 공화국	황열	14

	뉴질랜드	지진	
2017	스리랑카	쓰레기산 붕괴	16
	스리랑카	호우	
	멕시코	지진	
	대만	지진	
2018	콩고 민주 공화국	에볼라출혈열	11
	인도네시아	지진/쓰나미	
	모잠비크	사이클론	
2019	모잠비크	사이클론	10
	콩고 민주 공화국	에볼라출혈열	
	지부티 공화국	홍수	
	사모아 독립국	홍역	
	호주	삼림화재	
2020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고	10
			합계: 554

출처: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 URL: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425029.pdf>, 접속일자:2021.07.06.)

부록 5. JICA 코로나19 관련 물자 공여 실적

JICA의 코로나19 관련 물자 공여 실적

구분	지역	국가	날짜	공여 물자 내역	비고
1	아시아	베트남	2020.02	•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NIHE)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약(총액 1,400만엔 상당) 제공	
2	아시아	몽골	2020.02	• 몽골 보건부에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로서 작업복, 모자, 의 료용 장갑 등 총 300만엔 상당을 현지조달 하여 전달	현지 조달
3	아시아	미얀마	2020.02	• 미얀마 국립보건원(NHL)의 요청을 받아 코 로나19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및 프라이머 (총액 40만엔 상당)을 조달하여 제공	
4	아시아	네팔	2020.06	• 네팔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수처리용 화 학약품이 부족함 • 네팔의 코로나19 감염 대책으로 염소제를 현지조달하여 수도 사업체에 전달 • 감염자가 많은 인도 국경 가까운 지역의 11 개 수도 사업체에 총 3.1톤의 염소제를 배 포하여 약 11만 명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현지 조달
5	아프리카	케냐	2020.07	• 케냐 물·위생·관개부의 요청으로 9개 수 도 사업체에 3개월 분의 염소 등 정수용 약 품(총액 4,500만엔 상당)의 조달을 시작함 • 정수용 약품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팜플렛을 배포하여 안전한 물의 중요성과 정수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감염 예방 대 책 강화를 위한 인식의 공유를 도모함	
6	아시아	타지키 스탠	2020.07	• 타지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소독된 안 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타지키스탄 전역 의 수도 사업체가 사용하는 염소제(표백분) 의 조달을 지원함 • 타지키스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도 요 금 수입이 감소하고 전국 상하수도 공사에 사용하는 소독처리를 위한 충분한 양의 염 소제(표백분)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이에 JICA는 300톤의 표백분 공여를 결정하 였으며, 러시아제 또는 이란제 표백분이 조 달될 예정임	
7	아프리카	수단	2020.07	• 수단의 수도 하르툼의 바하리 정수장의 정 수용 염소제를 현지에서 조달하고 인도함 • 이번 지원으로 36톤의 염소제가 지원되어 6 개월에 걸쳐 안전한 물을 사람들에게 제공 할 수 있게 되었음	현지 조달
8	중동	팔레스 타인	2020.07	•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소독용 염소제의 지 원을 결정하고 10톤(약 4개월 분)을 긴급 조	

구분	지역	국가	날짜	공여 물자 내역	비고
				달함	
9	아프리카	남수단	2020.08	남수단 수도 주바의 정수장에 정수용 약 및 발전기 연료를 현지조달하여 인도함	현지 조달
10	아프리카	르완다	2020.10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유통망이 혼란됨으로 인해 농가는 비료 등 농업 투입 제품의 입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함 - 르완다와 야채 씨앗 공여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토마토와 양파 등 9 종류의 야채 종자를 부여함 - 긴급지원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종자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이 아니라 JICA의 공여분의 동일한 금액을 자비로 구입할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함	
11	아프리카	케냐	2020.10	- 케냐에는 종자 지원과 함께 서부 지역의 약 7,500 가구의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를 공여하기로 하고 각서를 체결함 -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위기에 직면한 농가를 지원하고 케냐에서 최근 크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함	
12	아시아	인도네시아	2020.11	-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디지털 비접촉식 체온계와 위생키트를 제공함 - 제공된 체온계는 코로나19 감염 관련 의료 시설이나 모자 보건을 포함한 기타 의료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임 - 위생 키트에는 JICA의 로고가 들어간 가방 안에 비누, 소독액, 천마스크, 휴대용 스폰 포크 세트 등의 위생용품이 들어 있음	
13	중동	이집트	2020.12	-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병원에 기관지경(펜탁스)과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히타치) 등을 제공함 - 공여된 장비는 동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개조된 호흡기 전용 ICU에 설치됨	
14	아프리카	모잠비크	2021.02	모잠비크 에두아르도 몬도라네 종합 인재 초등학교의 의뢰를 받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으로 마스크, 페이스실드, 비접촉식 체온계, 보호복 등을 공여함	
15	아프리카	기니	2021.03	기니 상수도 공사에 정수용 약품(149,219 유로)을 전달함	

출처: JICA 홈페이지의 자료 재구성(URL: <https://www.jica.go.jp/COVID-19/ja/responses/action/index.html>) 접속일자: 2021.07.14.)

부록 6. KOICA의 긴급현물지원 물품 수의계약 현황

KOICA의 긴급현물지원 물품 수의계약 현황('19.12~'21.05)

연 번	계약명 / 계약대상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1	2019 대 이란 의약품 긴급 현물지원 물품(애브서틴) / 이수애피스	2019.12.18.~ 2020.02.28.	499,898,32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⁶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⁷⁰⁾
2	2019 대 이란 의약품 긴급 현물지원 물품(페메드) /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	2019.12.18.~ 2020.02.28.	100,017,871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3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 구호물품 조달 / 주식회사 그린세이프티	2020.01.31.~ 2020.01.31.	6,819,000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⁷¹⁾
4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 구호물품 조달 / (주)삼호에스앤씨	2020.01.31.~ 2020.01.31.	337,813,500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5	2020 대 이란 의약품 긴급 현물지원 물품 조달 계약 / 이수애피스	2020.02.07.~ 2020.02-26.	569,434,24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6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 구호 물품 2차 구매계약 / (주)유일기기	2020.02.24~ 2020.02.14.	21,600,000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7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 구호 물품 2차 구매계약 / 아이제트-포그	2020.02.24~ 2020.02.14.	818,181,000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8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 구호물품 PCR 진단기기 구매계약 / 주식회사 비엠에스	2020.03.02.~ 2020.02.21.	66,000,000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9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현물지원(항체 진단키트, 휴마시스) / 휴마시스 주식회사	2020.05.11.~ 2020.05.22.	250,000달러 (약 279,525,00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⁷²⁾
10	마다가스카르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현물지원(진단키트) 조달 / 주식회사 씨젠	2020.05.28.~ 2020.06.09.	170,691,868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11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현물지원(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20.07.24.~ 2020.08.14.	199,800달러 (약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연 번	계약명 / 계약대상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진 단키트/오상헬스케어) / (주)오상헬스케어		223,396,380원)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12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도적 지원 물품(진 단키트/오상헬스케어/DR 콩 고) (주)오상헬스케어	2020.07.28.~ 2020.08.18.	45,000달러 (약 50,314,40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13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현물지원(상파울루, 향체진단키트, 휴마시스) / 휴마시스 주식회사	2020.08.12.- 2020.09.04.	300,000달러 (약 335,400,00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14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현물지원(튀니지/RT-PCR 진단키트/씨젠) (1) / 주식회사 씨젠	2020.09.17.~ 2020.10.20.	354,900,00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15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현물지원(세르비아/RT-PCR 진단키트/오상헬스케어) / (주)오상헬스케어	2020.09.18.~ 2020.10.16.	168,300달러 (약 188,159,40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16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현물지원(카자흐스탄/RT-PCR 진단키트/씨젠) (2) / 주식회사 씨젠	2020.10.15.- 2020.10.31.	504,400,00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17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현물지원(스리랑카/RT-PCR 진단키트/씨젠) (3) / 주식회사 씨젠	2020.11.09.~ 2020.11.30.	354,900,00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18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현물지원(페루/산소발생기/엔에 프) / 주식회사 엔에프	2020.11.20.~ 2020.12.04.	348,434,00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연 번	계약명 / 계약대상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19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을 위한 음압캐리어 2차 조달 / (주) 옷샘	2020.12.08.~ 2020.12.31.	645,050,000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20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을 위한 음압캐리어 소모품 조달 / (주)옷샘	2020.12.09.~ 2020.12.31.	842,507,077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21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도적 지원 마스크(백제약품) 조달 / 백제약품(주)영등포지점	2020.12.11.~ 2020.12.23.	2,314,193,000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22	코로나19대응 인도적 지원 조달계약 체결(인도/음압캐리어) / (주)옷샘	2021.05.04.~ 2021.05.31.	1,334,056,420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23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현물지원(인도/산소발생기/옥서스) / (주)옥서스	2021.05.06.~ 2021.05.31.	42,360,000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⁷³⁾
24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현물지원(인도/인공호흡기) / (주)멕아이씨에스	2021.05.13.~ 2021.06.03.	84,700,000달러 (약 94,643,780,000 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자료: KOICA 홈페이지. (URL: https://www.koica.go.kr/koica_kr/1091/subview.do, 접속일자: 2021.05.27.)

69)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70)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법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7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7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